

2003년

# 인 권 논 문 집

- 제2회 인권논문공모 수상작 -

2003. 12.



# 목 차

가작: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의 비판적 고찰 ..... 1

법감정 형성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언론매체와 교육현실을  
중심으로

이 덕 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가작: 국가정책의 강제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공간선택권 ..... 53

청계천 복원사업 정책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작업공간 침해를  
중심으로

정 필 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 권 논 문 공 모

##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의 비판적 고찰

- 법감정 형성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언론매체와  
교육현실을 중심으로 -

이 덕 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

# 목 차

---

---

## I. 들어가면서

### II.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1.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정의론의 측면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3. 정제된 법감정의 개선
4. 주체 확정의 문제
5.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 III.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1. 범죄보도관행에 의한 법감정의 조작가능성
2. 범죄보도의 사회적 역기능과 법감정의 왜곡
3. 구체적 사례
  - 1) 지준파사건
  - 2)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
4. 사형집행일을 기준으로 본 언론보도의 특징
5. 신문사설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 1) 1980년대 : 범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법감정
  - 2) 1990년대 이후 : 경직된 응보감정으로부터 논의의 핵심이 배제된 사형폐지에 이르기까지

### IV. 교육현실에서 형성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1. 올바른 법감정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2. 인권교육과 법감정의 상관관계
3. 법감정 교육의 실재
  - 1) 도덕(윤리)과 교육
  - 2) 사회과 교육
4. 교사의 인권의식과 법감정
5. 법감정 발달 수준에 관한 이론
6. 청소년 법감정의 수준

### V. 맺음말에 갈음하여 :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

---

## I. 들어가면서

인권은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거부되거나 부인되는 곳에서 인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의 보호는 인종과 국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개별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다수에 관련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역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그가 미결구금 상태의 집행대기 중인 사형수라 할지라도 오늘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임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형수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인정하게 된다.

인권은 '생명의 존중'과 잇닿아 있다. 한 사람의 사형수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만인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위험한 사회적 공리는 입증할 수 없으며, 생명존중의 인권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개개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성찰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사회일반이 지니는 법감정의 비판적 이해는 중국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로 귀결된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는 기존의 존치론과 폐지론의 논쟁사를 살펴보면,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의 억지력 내지 위하력의 문제, 재판가능성, 형벌로서의 기능과 균형성, 위헌성 내지 합헌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결과의 축적이 상당한 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 그 합헌성의 논거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제기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도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의 그 전개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법제정과 법운용, 사법행정을 포함하는 국가권력작용의 문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제도를 심정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국민일반의 법감정이라는 법률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 실제

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첫 걸음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형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제대로 진행시킨 경험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사형제도를 형벌론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시킨 사형폐지국가들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감정의 형성에 있어서 계몽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사회일반이 법감정을 학습하게 되는 주된 경로로서 기능하는 언론매체나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상당부분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이미 형성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감정이란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선언한 사법부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는 금과옥조로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던 탓에 사형존폐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추상적 개념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비결정적 요소를 가지고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법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그 구조적 모순을 증명하게 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장애요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 각도에서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는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매체(신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형관련 보도기사와 사설을 통해 언론매체가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감정을 어떻게 유도해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둘째는 법감정이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이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기까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습득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학습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이 올바르게 못하게 형성되고 그것이 언론매체에 의해 조작된 법감정과 결합할 경우 심각하게 왜곡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연구의 대상이 된다.

## II.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 1. 개념정립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은 시간적·공간적 상황에서 자연히 생성된 국민의 무의식적인 감정과 가치판단으로서의 도의적·법적 확신 또는 국민감정이 형벌제도로써 사형제도가 존립하게 되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면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사회 개선책이라는 점에 일면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그저 인도주의적·이상적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부르짖을 수만은 없다고 한다.<sup>1)</sup> 그러나 그 존치근거로서 밝힌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구명하려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감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개념의 올바른 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sup>2)</sup> 이에 대해 한 마디로 간명하게 정의하여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 인간행태를 결정짓는 근본가치로서 법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려는 법감정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 내에서 각 구성원의 윤리적 의식의 총합형태로서 합의에 이른 지배적·객관적 법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더하여 사회구성원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고, 지배적 인식에 도달한 보편성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정의감, 법의식, 법문화, 법양심, 현행법에 대한 존중의 감정인 준법의식, 공동체감정 등의 형식으로 표출되며, 이들 개별개념의 기저에서 일차적인 심리적 요소로 작용한다. 일부 학자들은 법감정과 위의 개별개념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sup>3)</sup> 이들 개별개념의

1)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서울: 박영사, (1998), 199면.

2) 독일의 법철학자인 나우케(Wolfgang Nauke)는 법감정을 '비과학적인 자연법의 찌꺼기, 정의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논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법감정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법감정을 이렇게 까지 평가 절하할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볼프강 나우케/변종필·최희수(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Rechtsphilosophische Grundbegriffe), 서울: 도서출판 지산, (2000), 202면.

형성과정에 법감정이 침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일반의 법감정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이고 평가적이며 감정적인 심리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인식과 법적 가치판단, 법감정을 총칭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개념정의만으로는 아직 법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감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며, 다의적인 가치요소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로 법감정의 실체를 축소하여 파악하는 일은 이 글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 과제가 될 것이다.

## 2. 정의론의 측면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감정은 위의 개별개념 가운데 특히 정의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형벌이론의 영역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목적의 하나를 탈리 오적 응보감정에서 구한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복(同害同復)<sup>5)</sup>의 이 감정이 과도한 사적 복수를 저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하게(?) 보이는, 사형제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응보감정의 배후에는 정의감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인간의 공격심이 도사리고 있다.<sup>6)</sup> 그런데 응

3) 91-11 연구보고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32-33면; N. 브리스코튼/김일수(역), 법철학, 서울: 서광사, (1996), 14면; 임웅,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1권, 한국법철학회, (1998), 88-90면;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0), 242-247면; 이영희, 법사회학, 서울: 법문사, (2003), 177면.

4) 광의적으로 법감정을 이해하는 입장으로는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 연세대, (1981), 356면; 최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대는 문집』 제17집, 성균관대, (1972), 121면; 양건, 법사회학, 서울: 민음사, (1989), 207면;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역), 법과 사회, 서울: 법문사, (1984), 125면; Setsue Miyazawa, “Taking Kawashima Seriously: A Review of Japanese Research on Japanese Legal Consciousness and Disputing Behaviour”, *Law and Society Review*, Vol.21, No.2, (1987), pp.221 참조.

5)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조훈, “동해동복(同害同復)”, 『법학연구』 제5권, 인하대, (2002), 46면 이하.

6) 카를 브루노 레더(Karl Bruno Leder)/이상혁(역), 세계사형백과, 서울: 하서출판사, (1995), 334면.

보감정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인권에 바탕을 둔 인간존엄의 가치보다는 국가의 절대권한을 상징적으로 확증하는 절대적 국가이론을 전제하고 있고,<sup>7)</sup> 책임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생한 침해의 결과에 상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감정의 원형에 반하는 것이다.<sup>8)</sup>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성숙한 오늘날에 있어서 응보감정만이 법감정의 유일한 구성요소는 아니며, 그 안에는 보다 이성적으로 세련된 정의감(正義感)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한 칸트(Kant)도 그의 고전적 응보론<sup>9)</sup>에서 응보감정의 본질은 범죄억제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의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것은 객관화된 형벌론 자체에 대한 정의, 즉 ‘형벌을 위한 형벌’이지, 인간존엄의 존중과 질서유지를 기도하는 수단으로서 형벌의 목적이거나 그러한 형벌을 둘러싼 정의감에 기반한 법감정과 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응보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적 응보는 많은 경우에 전혀 실현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입은 손해와 동등한 가치의 회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 응보는 정의 일반에 의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응보는 형식적인 동등함에 있지 않고 형벌의 비례성에 있다. 그러므로 범행의 경중과 비례관계에 있고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와 정당한 비례관계에 있는 형벌만이 정당하다.<sup>10)</sup> 칸트의 오류 역시 바로 이점에 있다. 즉 그의 견해는 행위자 개인의 구체적인 책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식적 응보는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체계를 결정하는 (절대

7) 울프리트 노이만(Ulfried Neumann) · 울리히 슈로트(Ulrich Schroth)/배종대(역),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 서울: 홍문사, (1994), 28면; 특히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문헌으로는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법문사, (2001), 330면; 이에 따르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것을 위임해 준 국민의 보복감정을 해소해 줄 의무를 가질 뿐,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범죄자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8) 라인홀트 치펠리우스/이재룡(역), 법의 본질, 서울: 길안사, (1999), 105면.

9) 칸트는 그의 ‘도덕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응보의 법(Wiedervergeltung-srecht)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변덕스러우며,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요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 고통은 많아도 종신형에 복역하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Hrsg. v. W.Weischedel), 5. Aufl., (1982). S. 454 ;칸트의 적극적인 고전적 응보론에 대해서는 마틴 P. 글딩/장영민(역), 법철학, 서울: 제일출판사, (1982), 144-150면 참조.

10) A. Kaufmann, Um die Todesstrafe, (1957), S. 23.

적)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살인에는 사형으로!”라는 원칙은 성립될 수 없으며, 정의에 걸맞지 않는다.<sup>11)</sup>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은 따라서 다양한 정의(正義)의 형식을 고려해야 하며,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의의 목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오늘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기인한 것이기에 현대 형벌의 본질과 목적은 이러한 국가의 법질서 기능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벌의 질서유지기능과 응보감정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sup>12)</sup> 형벌은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단순히 절대적 형벌이론<sup>13)</sup>이 요청하는 책임과 형벌사이의 절대적 균등을 넘어서 범죄자와 사회의 단절된 연대성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sup>14)</sup> 즉 형벌은 범죄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다시금 복귀시키기 위해 배분적 정의와 합법적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야 한다.<sup>15)</sup> 이러한 맥락에서 베르너 마이호퍼(Werner Maihofer)가 “형벌 그 자체는 도덕적 응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교육 또는 오성주체인 범죄자에 대한 영향을 통한 개선 또는 위하(威嚇)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sup>16)</sup>라고 주장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규범가치가 개입하는 정의론의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적 정의,<sup>17)</sup>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sup>18)</sup> 절차적 정의, 형사적 정의<sup>19)</sup>가 논의될 수 있다.<sup>20)</sup> 대개의 경

- 
- 11)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논총』 제14권 제1호, 인제대, (1998), 358면.  
 12) 심재우,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형벌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5/6월호), 4면.  
 13)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형벌을 이해하는 정의론에 대해서는 Graeme Newman/이경재(역), 서양형벌사, 서울: 길안사, (1997), 413-417면; 사형제도에 있어서 절대적 형벌론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유지영, “형벌론과 사형”, 『명형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 119-120면 참조.  
 14) 김일수,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서울: 세창출판사, (1998), 9면.  
 15) 형벌이론에서의 정의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르투어 카우프만/허일태(역), 법철학입문, 부산: 세창출판사, (2001), 63면.  
 16) 베르너 마이호퍼/심재우(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서울: 삼영사, (1996), 167-168면.  
 17) 헌법적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준일, “헌법적 정의와 사형제도”, 『월간 에머지』 2002년 3월호 기사([http://www.emerge.joins.com/200203/200203\\_08.asp](http://www.emerge.joins.com/200203/200203_08.asp)) 참조.  
 18)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형벌의 정당화 문제 관해서는 울프리트 노이만 · 올리히 슈로트, 앞의 책, 29-30면; 유호중, “형벌의 정당성 근거에서 본 사형의 정당성”, 『월간 에머지』 2002년 3월호 기사([http://emerge.joins.com/200203/200203\\_09.asp](http://emerge.joins.com/200203/200203_09.asp)) 참조; 형벌이라는 비용을 분담하는데 있어 정의로운 분배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범죄의 중함 정도와 그가 그 범죄를 저지를 때 얼마만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렀는가의 정도와 비례하게 형벌이 내려져야한다. 이와 관련된 자

우 법감정의 정의론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사회현상에 대해 법감정이 개입하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영역-이를테면 공동체 내에서의 재화와 부담에 대한 개인의 정의론-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법감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요청은 그러한 긍정적 영역에서만 출몰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제도와 관련된 부문에서도 늘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국민일반의 법감정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절차적 정의에 따라 균형성을 유지하는 정의론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적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정의론의 본질에 입각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절차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올바른 의사소통에 전제되는 객관적 균형감을 사회일반에 전달하는 교육과 여론의 형성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감정 형성에 미치는 이들 동인의 작용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부분적인 관점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에 동의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법감정 형성에 편향된 형사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응보감정의 계몽이 그 지속된 역사적 경과에 따라 거두었던 일정한 성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정의의 영역에서조차 사형이 가장 엄중한 형벌로서 과해지는 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하려하지 않는다. 정의의 문제는 그것이 ‘부분적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통합’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사형제도에 관련한 법감정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

세한 논의는 유호중, “도덕적 비난과 형벌의 정당화-도덕적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19) 형사적 정의에 있어서 형벌의 정당화 문제에 관해서는 라인홀트 치펠리우스/양화식(역), 법철학, 서울: 도서출판 지산, (2001), 385-390면; 형법상의 정의에 있는 G. 델 베키오/장광수(역), 정의의 문제, 서울: 양영각, (1983), 168-173면 참조.

20) 이에 관해서는 치펠리우스, 법철학, 323면 이하 참조.

### 3. 정체된 법감정의 개선

일반적으로 법감정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 타고난다는 생득설과 후천적 요인으로서 환경, 경험, 교육, 학습 등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라는 획득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선천적 소질과 후천적 환경-특히 경험과 교육-의 영향으로 형성된다는 종합적 관점이 지배적이다.<sup>21)</sup>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에 관해서는 인간의 응보욕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것이 후천적 요인으로서 학교교육을 통한 학습, 미디어를 통한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득설이 타당한 근거로 보인다.

법감정이 법공동체 내에서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당연히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법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적 법감정이 내리는 법적 결정에는 구성원의 개인적 결함과 착오에 기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선입견, 이기심, 선동 등이 작용하거나 법감정지수에 있어서의 미성숙, 법적 문제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오도, 교육의 부재, 언론에 의한 법 여론(法輿論)<sup>22)</sup>의 조작가능성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형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오늘날 사형제도는 사회일반에 필요 이상으로 응보감정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러한 오류의 인자들은 ‘응보감정이 곧 법감정’이라는 도식을 전개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응보감정의 소박한 실존적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응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응보감정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국가와 법의 자의적 추정을 허용하는 허구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숭고한 법에 대한 신뢰감을 저급한 복수의 감정이나 충동본능의 충족 정도로 절하시키고 있을 뿐이다.<sup>23)</sup>

사회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감정은 그 기능면에 있어서 법침해나 권리침해의 결과, 관련자의 지위나 신분 및 완전성애의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으나, 법감정의 기능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자체**에 대해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기능도 겸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와 관

21) 임웅, 앞의 논문, 91면.

22) 법 여론은 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그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영희, 앞의 책, 178면.

23) 김일수, 법·인간·인권-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서울: 박영사, (1990), 412-413면.

련된 법감정의 경우도 응보감정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 4. 주체 확정의 문제

법감정은 일반국민 모두가 그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감정 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직무상 법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제하거나 평가하는 부문의 사람들인 법원, 의회, 행정부, 변호사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이익단체 등과 같은 영역의 법전문가들<sup>24)</sup>과 방송이나 신문 등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기관을 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제255회 정기국회에서 추진된 사형제도폐지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화하려 했던 과정에서 사회일반의 법감정과 전혀 관계없이 법감정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주체들이 정치적 맥락에서 입법추진을 하였다든 견해에 의하면,<sup>25)</sup>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낮설고 진보적인 이 법안의 상정은 여론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입법자들은 법안상정 당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지닌 이성적 공론과의 연합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형 폐지법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법추진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사형폐지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주장을 국회가 수용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법안상정일 가능성이 높다.<sup>26)</sup>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은 155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여 법

24) 법전문가들이 지닌 법의식(법감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 96-10 국민법의식조사연구(IV),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6), 13면 이하 참조; 특히 학자들의 법감정과 관련하여 응보적 관점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법감정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형벌사적 측면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정서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로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경재, “근대이후 유럽의 형벌 유형-사형의 기원과 처벌방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2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년 봄호), 278면; 한편 사형의 불가피성을 들어 사형폐지의 반대논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최근의 견해로는 조병인, “사형은 폐지대상이 아니다”,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 7/8월호), 32-33면; 응보형이 정당한 형벌론이며, 정의실현에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류전철, “형법해석학적 관점에서 응보론의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7-19면; 한편 법률실무가(변호사)의 입장에서 사형폐지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울: 월간조선사, (2003); 그러나 앞의 논거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1세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논변이라고 판단된다.

25) 이상돈, “사형제도-성숙한 법문화의 과제-”, 『월간 에머지』 2003년 3월호 기사([http://emerge.joins.com/200203/200203\\_07.asp](http://emerge.joins.com/200203/200203_07.asp)) 참조.

26) 당시 정치인들은 시민단체에 의해 이미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정치적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다.

안을 제출한 후 그 과정에서 검사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국회법사위원회와 보수적인 대한변호사협회,<sup>27)</sup> 검찰을 대변하는 법무부 등이 제시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조해 보면 이들이 주도하는 법감정이 결과적으로 법안의 국회심의회와 통과를 좌절시키는 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sup>28)</sup>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수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어 왔으나,<sup>29)</sup>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일반의 법감정이라는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공공 여론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해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론조사의 특성상 질문의 순서, 조사가 행해지는 상황, 제시된 선택적 한계 및 사회경제적 인종과 성(性)의 구성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sup>30)</sup>는 점에서 사형의 존치와 폐지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여론에 의하여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사형제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존치론 측의 손을 들어주는 원인은 사회일반이 충분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거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시점에서 시도되는 까닭에 실질적인 이유를 냉정하게 고려함이 없이 격정적이고 일시적인 흥분에서 의도되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사형

27)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22일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여건상 사형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형폐지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2001년 11월 22일자 기사 참조.

28) 2002년 10월 4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난 5년 동안 사형집행이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사형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일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스스로 국가 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행태는 큰 문제”라며 사형집행제 준수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도 “최근 극악무도한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으나, 현 정부 들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 50명 이상이 미집행 상태에 있다”며 “선량한 인명과 사회방위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의 이런 소극적 자세로 선량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4일자 기사; 특히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당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토론과정을 보면 극단적인 옹보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 토론과정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30일자 기사 참조.

29) 비교적 최근의 사형제도 관련 여론조사결과로는 2000년 10월 15일부터 10일간 한국갤럽에 의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행해진 여론조사와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집, 준법의식의 실태 및 준법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2001), 87면 참조.

30)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Control*,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238-239.

31) 동일한 견해로는 A. Kaufmann, a. a. O., S. 15; 박홍규, “사형제도 폐지의 법학적 논리”, 국

제도와 사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과 사형제도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충분히 홍보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사형에 대한 국민정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sup>32)</sup>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에 대한 법감정은 그 주체로서 사회일반과 법운용자, 언론기관의 관점을 분리하여 고찰하되, 이들 모두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법감정이라는 언어적 표현에 친숙해 있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회일반에 관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누구의 법감정인지도 모호하다.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형식으로 나타난 법감정이라는 표현은 언론기관에 의해 사회일반에 전달되고 있으나 이는 법운용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을 뿐 사회일반이 지니는 법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그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일방적 전달체계에 의해 강요된 법감정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능동적 자세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에 대한 수동적 자세를 전제로, 주어진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sup>34)</sup>

## 5.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법관은 법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할 분명한 책무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체에 대한 확정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법관의 판단은 그것이 법관 개인의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수 있더라도 그 자체를 곧 국민일반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법감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법감정은 명백하게 확정된 주

---

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9), 125면.

32) 허일태, “사형제도의 위헌성”, 국제형법학술대회자료집-형법에서의 생명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001. 9), 36면.

33) 배문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절대적 종신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7면

34) 조훈, “규범의 사회화? 사회의 규범화?”,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제18집, (인하대), (2000), 28면.

체들 사이에서 논의대상에 대한 합리적 수렴절차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야 하고, 만일 이러한 절차가 결여된 것은 결과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법감정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법치주의적 전통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이 여론과 법감정이라는 추상적 근거를 들어 국민의 생명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는 허용하기 어려운 논리의 전개를 고수한다면 만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생명권의 박탈에 상응하는 다른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본다는 것이 되어 흉악범을 제외한 사형규정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35)</sup>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3년 2월 28일 대판 62도241판결<sup>36)</sup>에서 사형제도를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sup>37)</sup>고 규정한 이래 그 존치의 필요성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도덕적 판단’<sup>38)</sup>에서 구하고, 나아가 ‘국민적 총의’<sup>39)</sup>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국민의 정서적 근거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민의 도덕적 감정이고, 도덕적 판단이며, 국민의 총의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차라리 국민의 응보감정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89년 헌법재판소의 창설 이래 사형수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사형집행을 목전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 사형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논거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형의 위헌성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1989년 강도

35)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극과 현실”, 국제형법학술대회자료집-형법에서의 생명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001. 9), 23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생명권에 대한 우리 헌법학계의 헌법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황치연,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생명권에 대한 인식”, 『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235면 이하 참조.

36) 이 판결은 1948년 3월 12일의 日本 最高裁判所 合議部の 判決(最大判 1948. 3. 12. 刑集 第2卷 第3号, 191面)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조규찬,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성균법학』 제9집, 성균관대, (1964), 155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 판결은 그 문체의 유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뒤따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7) 해당부분에 대해 자구의 가감이 없는 동일한 판결로 1967. 9. 19, 대판67도988판결; 1991. 2. 26, 대판90도2906판결 참조.

38) 1967. 9. 19. 대판67도988판결.

39) 1983. 3. 8. 대판82도3248판결; 1987. 6. 12. 대판87도1458판결.

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창설 이전의 사건에 대해 60일 동안의 시한부 구제절차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각하시켰다. 이어서 1990년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에 의해 두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제기된 직후 법무부는 해당 사형수에 대해 사형집행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4년이 경과한 1995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당사자가 사망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 소원을 각하해 버렸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시도에서 비로소 응답한다.<sup>40)</sup> 1996년 11월 28일 95헌바1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그 다수견해에서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을 원하지 않으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나 우리의 문화수준<sup>41)</sup>이나 사회현실, 소박한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도래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sup>42)</sup>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국민일반의 법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여론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살피면, 여론조사는 알 기회를 전혀

40) 이 사건은 1994년 12월에 제기된 것으로서 초등학교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심리중인 상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어 청구인은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41) 이 결정에서 말하는 문화수준이란 인간의 존엄이 사형수에게까지도 미치고 보장되는 사회상태로서의 성숙한 문화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호퍼에 의하면 이러한 문화상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의 자의적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상태를 선택하는 인간의 자기결정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적 본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언명처럼 “인간 스스로가 목적을 결정하고 그에 걸 맞는 활동을 통해 ‘메워야’할 ‘창조의 공백’”이라고 한다. 마이호퍼, 앞의 책, 36-38면 참조.

42) 이 결정에 대해 형사정책적, 헌법해석적,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논문으로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제43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2), 37면 이하 및 같은 논문(하), 『사법행정』 제435호, (1997. 3), 29면 이하;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는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부산: 세종출판사, (1997), 86면;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법조』 제484호, 법조협회, (1997. 1), 184면 이하;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8), 7면 이하;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법이론적·정책적 검토-”,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Ⅳ, (2000), 38-46면;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사법협세미나 사형제도와 대체형(중신형), (2000), 13-17면 참조; 그러나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장 중하다면 범죄의 일반예방 효과도 높을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박한 문외한의 사고로서 과연 이러한 표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가을호), 102-103면

갖지 못한 대다수 국민의 평범한 생각으로, 알 기회를 가져서 알고 있는 일부 국민의 생각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당연하다는 생각은 국민 대다수의 소박하고 평범한 서민감각이며, 국민 대다수는 이와 같은 서민감각을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므로 그들의 생각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될 것은 뻔한 노릇이며,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완전하게 전달한 후가 아니면, 사형폐지론을 비판하는 데에 남용되는 의도적인 산물일 뿐 국민일반의 법감정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생명은 평범 이상의 신비스러운 외경의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평범한 서민감각을 일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민일반의 법감정으로 승화하거나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위 근거는 적어도 사형제도의 존치에 관한 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sup>43)</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법은 현재 존재하는 현상만이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당위의 모습을 담은 규범이라는 명제를 취하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논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사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중심문제로 삼아야지, 단순히 법감정이나 국민적 요소로 포장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의 위헌성 존폐문제를 논할 때, 가능하다면 헌법 또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리고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된 헌법해석원칙에 의해야 할 것이다.<sup>44)</sup>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생명과 자유의 존중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인 인격권적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인간존엄과 인명존중이라는 헌법의 최고가치 구현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을 객관화하여 인격의 핵심을 파괴하는 헌법해석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은 국가가 그의 최고과제로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에 따르면 사형은 헌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sup>45)</sup> 사형제도를 형벌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한 독일에 있어서 그

43) 헌법재판소 1996년 11월 28일 95헌바1 결정 가운데 소수의견을 개진한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 참조.

44) 최석훈, “사형이 정당한 국가형벌일 수 있는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년 1/2월호), 20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생명의 처분불가능성’을 고수하고,<sup>45)</sup> 이로부터 특히 (질적 또는 양적으로 ‘고가치인’) ‘생명 대 생명’이라는 공리주의적 이익형량은 법질서의 토대와 모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결단에는 ‘사회정책적 합목적성사고’도, ‘국가정책적 필요성’도, 또한 ‘대다수 인구의 지배적 의식(법감정)의 일반적 변화’도 아무런 변화를 가할 수 없다<sup>47)</sup>고 선언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sup>48)</sup>

### III.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 1. 범죄보도관행에 의한 법감정의 조작가능성

오늘날 언론매체는 인간이 사회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유용한 장치로 기능하며, 사회일반의 법감정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언론이 전하는 말, 표정, 기호 등은 개인의 그것에 비해 월등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사회일반의 태도가 대개의 언론에 대해 개인보다 공신력이 큰 것처럼 느낀다는 사실이

45) Tae-Young, Ha, Die Entwicklung der Diskussion über die Generalpräven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agisterarbeit Münster (1992), S. 5, 38.

46) BVerfGE 49, 1(46).

47) 빈프리트 하쎄머(Winfried Hassemer)/배종대 · 이상돈(역), 형법정책-법치국가와 형법, 서울: 세창출판사, (1998), 249면.

48) 사형제도에 관한 외국의 판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있어서 특히 위헌성을 제기한 Furman v. Georgia 408 U.S. 238(1972)사건과 합헌성을 주장한 Gregg v. Georgia 428 U.S. 153(1976)사건의 판결은 수미일관 사형제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우리 사법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Rolando V. del Carmen, CRIMINAL PROCEDURE-Law and Practice-, THIRD EDITION, (1995), pp.415 이하 참조; 독일의 경우는 혐의의 인간존엄권의 박탈불가를 확인한 연방헌법재판소의 BVerfGE 64, 261 (284)-Hafturlaub; 72, 105(115)사건판결과 Zippelius, Reinhold., Erläuterung zu Art 1 GG, in Kommentar zum Bonner Grundgesetz. 57 Lieferung, Heidelberg C. F. Müller, (1989), Rn 40; Starck, Christian., Das Staatsrecht der Bundesverfassungsgericht im Politischen Prozeß der Bundesrepublik, Tübingen, J. C. B. Mohr, (1989), Fn 1. Art. 1, Anm. III 8; Stern, Klaus.,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 I, München C. H. Beck, (1988), S. 6; Podllich, Adalbert., Werte und Wertungen im Recht., AöR 95 (1970), AK-GG, Art. 1 Abs. 1, Rn. 72 참조; 일본의 경우는 日本最高裁判所の 1943年 合議部判決 最大判 1943. 3. 12. 刑集 2卷3号, 191面과 1993年 9月 21日 第3合議部判決에서 大野正男 大法官의 보충의견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서는 단도 시케미츠(團藤重光)/김희진(역), 사형폐지론, 서울: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96면 이하 참조.

다.<sup>49)</sup> 따라서 언론보도는 사회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일반이 인식의 객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경우 굴절된 법감정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보도의 윤리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sup>50)</sup>에 합당한 보도기사를 사회일반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언론은 범죄를 매우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으며,<sup>51)</sup> 사형제도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sup>52)</sup> 그런데 범죄나 사형제도에 대해 기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취재를 하더라도 현실과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읽어내는 내용이 전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취재행위 자체가 순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sup>53)</sup>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삶의 현실과 신문지면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놓여 있는 여과장치로서의 편집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54)</sup> 여기서 그 편집과정이 공정하다

49) 유일상, 언론법제론, 서울: 박영사, (2000), 120면.

50) 언론의 자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론에 대해서는 성낙인, 언론정보법, 서울: 나남출판, (1998), 189-195면.

51) 우리나라 주요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1997년 1월, 4월, 7월, 10월의 전체 신문기사 가운데 범죄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육상,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8), 70면 참조.

구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종합면, 사회면 총기사 수	4,123	4,145	5,231	4,500
범죄기사 수	714	518	895	709
비율(%)	17.4	12.5%	17.1	15.6

구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균
종합면, 사회면 총기사 수	4,123	4,145	5,231	4,500
범죄기사 수	714	518	895	709
비율(%)	17.4	12.5%	17.1	15.6

5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ditor & Publisher 2000년 11월 6일자 글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의 “저널리즘/신문은 사형을 부추기는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www.kpf.or.kr/infoapp/libr\\_new](http://www.kpf.or.kr/infoapp/libr_new))

53) 이러한 원인은 신문기자가 기사작성 과정에서 ‘인간분위’와 ‘사건분위’ 가운데 어느 방향에 윤리관을 설정하고 있는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J. C. 메릴 · R. L. 로벤스타인/오인환 외(역), 매스컴과 사회-미디어·메세지 및 인간-, 서울: 삼영사, (1975), 261-273면; 언론 취재체계와 그 관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진홍 편, 한국저널리즘의 쟁점, 서울: 법문사, (2001), 670면 이하 참조.

54) 기사선택의 메커니즘으로서 게이트키퍼(gatekeeping process)에 대해서는 S. Sherizen., ‘Social Creation of Crime News’, *Deviance and Mass Media*, C. Winick(ed), Sage(1978), pp.205; 김홍규, “범죄기사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제21호, 한국언론학회, (1986), 129면; 안병찬, 저널리즘강의, 서울: 나남출판, (1999), 49-57면; 신문편집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손석춘, 신문 읽기의 혁명, 서울: 개마고원, (2003), 참조.

든가 부당하다든가는 논의할 수 없지만 범죄와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법감정 형성에 기여한 객관적 보도사실의 실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하여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언론매체는 사건과 사고의 보도에 있어서 사안에 대해 쉽게 흥분을 유발하게 하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각 언론사마다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편집방침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들은 같은 사건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취재현장에서의 열띤 취재경쟁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보도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사별 차이가 거의 없다. 뉴스보도의 편향성과 일회성은 사회일반이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만들어 가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사회일반에 의제를 설정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 역시 문제점이다.<sup>55)56)</sup> 이러한 경향은 사회일반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여 범죄사건이나 사고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 내용보다는 흥미위주의 에피소드들을 부각하여 묘사하고 규정함으로써 정작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게 한다.

잘못된 범죄보도관행의 형성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언론매체가 가지는 조직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고, 언론인, 기자 개인의 자질에서도 원

55) 이와 관련해서는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한국언론학회, (2001·봄호), 176-178면; 김상균, “범죄보도 실태와 선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8), 147면 이하 참조.

56) 범죄기사의 선정성은 표현방식에 따라 기사문장의 표현방식(Francke, W., Sensatio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19th Century Reporting: “The Broom Sweeps Sensory Detail”, *Journalism History*, Vol. 12, No.3-4, (1985), pp.80-81; Viano, E., “Victim, Crime and the Media: Competing Interests in the Electronic Society,” *Communication and the Law*, Vol.17, No.2, pp.44); 기사의 위치나 표제(Sherizen, S., “Social Creation of Crime News,” in Winick, C. ed., *Deviance and Mass Media*,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220-221; Soothil, K. and S. Walby, *Sex Crime in News*, London: Routledge, (1991), pp.21); 사진의 사용(Marsh, H. L., “Crime and Press: Does Newspaper Crime Coverage Support Myth about Crime and Law Enforcement?,” Ph. D. Dissertation, Sam Huston States University,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pp.16)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박용규,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인을 찾을 수 있다.<sup>57)</sup> 또한 언론매체의 전달체계가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사회일반은 언론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언론이 설정한 사회적 의제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언론의 상업주의적 특성에서도 비정상적인 범죄보도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론인의 의식, 즉 표면적으로는 윤리의식과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공익의식의 부재라는 결합된 원인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sup>58)</sup>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도의 표현양식에 국한되지만 공익의식의 문제는 보도의 표현양식을 넘어서 보도의 타당성, 즉 보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윤리의식의 전제이자, 윤리의식을 포괄하는 내용이 된다.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착수, 체포, 구속에서부터 기소단계까지의 피의사실보도 뿐만 아니라,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전에 선행된 보도가 수사의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sup>59)</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범죄보도는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범죄자의 최종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보도란 단순한 사건개요의 적시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 수사 및 검거과정, 기소 및 판결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피해자 및 범죄자의 심적 상태 등 실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보도기사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사회일반은 왜곡된 여론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법감정의 일부로 오인할 수 있다.

## 2. 범죄보도의 사회적 역기능과 법감정의 왜곡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보도는 단순히 범죄에 관한 사실을 사회일반에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sup>60)</sup> 범죄보

57) 노성호, “언론의 범죄보도관행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3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년 1/2월호), 6면 이하.

58)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의식에 관해서는 이원행, 취재보도의 실제, 서울: 나남출판, (1994), 293-304면.

59) 사법보도의 각 단계별 취재방법에 있어서는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1999), 450-460면.

도를 통하여 사회일반은 현재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한편으로 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토론을 증진시킴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및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사법기관 역시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형성된 국민 여론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그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범죄보도를 통해서 언론매체는 사회일반과 형사사법기관간의 대화의 통로로서 기능한다. 범죄보도는 개개 범죄 사건들을 알림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여 사회전반의 법적, 도덕적 규범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범죄보도의 순기능이면서 또한 그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는 이러한 순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기능의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sup>61)</sup> 언론매체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개개의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전체상을 오도할 수 있고, 범죄를 보도할 때 개별 범죄사건이 지닌 사회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지닌 기사로서의 가치에 더욱 주목한다.<sup>62)</sup> 따라서 사회적 의미와 기사로서의 가치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의미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사의 비중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그를 통해 형성된 법감정은 변질되기 마련이다.

또한 범죄보도가 범죄자, 피해자, 또는 사건주변 인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범죄보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실의 전달에 있으므로 언론은 사실의 전달 자체에 가장 비중을 둔다. 그러나 그 사실이라는 것에는 개인의 인권, 즉 초상권이 나 신원 그리고 피의사실 등에 관한 사항들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경우에

60) 언론매체의 사회적·이념적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언론학회 편, 언론학원론(상), 서울: 범우사, (1994), 375면 이하; 특히 언론범죄보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4-29면 참조.

61) 이 글의 논지를 다소 벗어나는 것이지만,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자 증가에 양적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범죄행동에 영향을 주기 쉽다는 주목할 만한 견해가 있다. 심영희, “범죄와 언론보도”, 『한국 언론학보』 제6권 제1호, 한국방송학회, (1995), 79면 이하 참조.

62) 보도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단순성, 극적인 성격, 인격성, 주제의 연속성, 형식적 친화성, 비예측성이 고려된다. R. V. Ericson, P. M. Baranek and J. B. L. Chan, *Visualizing Deviance*, Univ. of Toronto Press(1987), pp.139-149; 이병기/이기웅, 앞의 논문, 12면.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사건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높은 기사가치를 부여받기도 한다.<sup>63)</sup> 따라서 기사가치와 개인의 인권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언론의 속성상 인권을 무시하기 쉽다.

간혹 범죄보도기사가 오보로 들어날 때 그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언론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과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그것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감안할 때 오보가 미치는 파괴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sup>64)</sup> 비록 언론에서는 하찮은 기사로 치부하는 단신의 경우에도 막상 당사자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후에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일단 보도된 기사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오보의 심각성은 더욱 큰 것이다.<sup>65)</sup>

또한 형사사법기관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사회일반에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도록 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사회적 가치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폭도 넓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대표하는 처벌 위주의 응보적 가치관만을 사회일반에 유포하는 것은 편향된 여론 형성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또한 매스미디어에 의한 여론이 법관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으며,<sup>66)</sup> 설사 판결 전 범죄보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 내지 법관의 지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언론의 선판결로 인해서 방해받게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법관 스스로도 언론보도가 유·무죄의 사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sup>67)</sup> 판결 전 보도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sup>68)</sup>

63) 이와 관련하여 범죄보도에서 관계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밝히는 것의 허용성 여부에 관해서는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2년 여름호), ([http://www.pac.or.kr/webzine/23\\_autumn/index.html](http://www.pac.or.kr/webzine/23_autumn/index.html)) 참조.

64) 오보의 문제는 언론의 양적 증가와 과열경쟁에 원인이 있다. 오보와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박기순, 언론학의 이론과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323-331면.

65) 오보발생의 원인과 생성구조에 대해서는 정결진, “오보와 언론의 신뢰”, 『언론학연구』 창간호, (1997), 부산경남언론학회, 215-222면.

66) 신평, “사법과정보도의 문제점과 그 영향”,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5년 봄호), 26면.

67) 신평, 앞의 논문, 25면.

### 3. 구체적 사례

#### 1) 지존파사건

‘지존파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각 신문매체의 논조는 사실보도와는 거리가 먼 격한 표현과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나타낸다.<sup>69)</sup>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1994년 9월 22일자 신문 1면의 표제<sup>70)</sup>에서 “인간이 이럴 수도 있나...”(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살인마들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지존파일당의 극악한 범죄수법...”(동아일보 4면), “이번 7인조 지존파가 저지른 연쇄납치 살해 시체 유기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강력범죄의 수법을 총망라한 집합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끔찍한 것이어서 세상을 소스라치게 하고 있다”(동아일보 31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이들의 범행은 30여년 군사독재 하에서 심화되어온 윤리마비, 인명경시, 물질만능풍조와 가정의 위기, 부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심이 복합된 범죄여서...”(중앙일보 1면), “그토록 잔인하고 극악할 수 있을까”(한국일보 1면)라는 기사 내용을 전달한다.<sup>71)</sup>

신문윤리보도기준에 의하면 용의자에 관한 보도 항목에서 “형사사건의 현장검증에 있어서 참혹한 장면은 사진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4대 주요 일간지들은 범인 가운데 한 사람의 현장검증사진을 싣고 있으며, 금지되어 있는 범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범죄자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사회일반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윤리성이 결여된 언론매체의 보도는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지 않아 사회일반이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해버리

68) 하태훈, “판결전 범죄보도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년 3/4월호), 5-6면.

69) 특히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일보의 지존파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9월 24일자 1, 2, 3, 5, 29, 30, 31면에서, 9월 25일자 1, 2, 3, 7, 14, 26, 27면에서, 9월 26일자 1, 2, 3, 4, 29, 30, 31면에서, 9월 27일자 5, 29, 30, 31면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다가 9월 27일 저녁에 또 다른 연쇄살인혐의로 검거된 온 모씨에 대한 검거기사로 대체되기까지 보도기사와 사실이 혼재된 형태로 사회일반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70) 편집과정에서 신문기사의 표제(헤드라인)는 본문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압축되거나 얼핏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본문과는 다르게 압축되어 표현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권효, 헤드라인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북랜드, (2000), 14면 이하 참조.

71)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제4조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내용은 ‘보도와 논평의 분리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고, 사법적 판단에 선행하여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존파에 대해 국민적 사형선고를 이끌고 있다.<sup>72)</sup>

지존파에 대한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범죄보도의 특성상 특정 사건의 보도가치를 따져 기사화하고 있는 보도관행에 비추어, 사건이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비밀상적이라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킨다. 기사선정기준으로서 이러한 보도가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의 깊숙한 부분까지 사회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범죄보도는 지나치게 세밀한 묘사방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보도와 논평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회일반에게 부정적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자에 대한 공동체적 응보감정은 자연스럽게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치과의사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앞에서 설명한 범죄보도의 사회적 역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또한 범죄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 있어서 언론매체의 진실 규명과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매체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발생 직후인 1995년 9월 3일자 대다수의 신문들은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의 실명 및 직업, 거주지 등을 직접 밝히고, 사건의 전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범죄보도의 주된 취재원인 경찰과 검찰로부터 배포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사단계에 있는 이 사건을 피의자가 진범이라는 예단을 가지게끔 ‘혐의보도’한다.<sup>73)</sup> 혐의

72) 지존파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보도의 선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65-68면 참조.

73) 혐의보도 내지 전문(傳聞)보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그 상당성이 부인된 사례에 있어서는 김진원, “취재보도와 편집, 어떻게 할 것인가-범죄혐의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1년 가을호) ([http://www.pac.or.kr/webzine/21\\_autumn/index.html](http://www.pac.or.kr/webzine/21_autumn/index.html)); 혐의보도를 하는 원인은 독자들이 검거 이후의 과정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기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진국, 앞의 논문, 30-31면.

자체는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일반에 단순한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법감정 형성에 전제되는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sup>74)</sup>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내용과 견해를 비중 있게 다루는 반면 피의자 변호인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편향적인 범죄보도는 사회일반의 법감정을 성급하게 자극하여 최종심은 물론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거나 여론재판으로 몰고 갈 수 있다.<sup>75)</sup>

공판과정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직후 “딸도 무참히 살해 동정여지 없어”라는 표제 아래 피고인이 명백한 범인임을 밝히고, 그 유죄인정의 요지를 판결문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sup>76)</sup> 1996년 6월 26일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4부가 내린 원심파기, 무죄 선고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종전의 태도에서 선회하여 제 각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우리 법원이 “엄격증거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거나(한국일보 6월 27일자), “유죄입증은 검찰책임”임을 재확인하였다(국민일보 6월 27일자)는 내용의 기사를 실고 있고 판결 후 검찰 및 변호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아가 자체적으로 이 판결이 증거가 불충분한 강력사건에 대해 더욱 치밀한 초동수사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증거확보를 요구하는 의미도 갖게 된다고 평하였다(중앙일보 6월 27일자).

그러나 “살인정황은 인정되지만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헤드라인을 표시하여 검찰이 판결 직후 이미 상고 의지를 밝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사회일반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이 사건을 ‘한국판 O. J. 심슨사건’이라고 표현하여 사회일반의 호기심과 관심자극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건의 개요나 현장도를 그래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특징은 사회일반에 생소한 법의학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74) 팽원순, “언론이 재판관은 아니다-범죄보도와 매스컴재판-”, 『저널리즘비평』 제1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1990), 58면;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판 전의 신문기사 작성에 기사로의 특히 재미있는 점이 들어가야 할 것을 요청한다. J. P. 존스/오소백(역), 매스컴 취재와 보도의 실제, 서울: 집현전, (1987), 289면.

75)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범죄보도가 여론재판의 기능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994년 발생한 강주영양 유괴살인 사건의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재경, “부산 국민학생 유괴·살해사건 수사결과”, 강력검사연구논문집(V), 대검찰청, (1996), 389-438면.

76) 조선일보 1996년 2월 24일자 기사 참조.

화재모의 실험과 국내외 법의학자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11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판결 불복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 형사2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내용을 단신으로 처리하였다. 2000년 2월 17일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확정되고 2003년 2월 26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언론매체는 우리 법의학의 실태와 수사관행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을 뿐,<sup>77)</sup>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1심 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오가면서 8년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 받았던 무고한 피해자(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 4. 사형집행일을 기준으로 본 언론보도의 특징

1985년 11월 1일 각 신문들은 1면 우측 상단에 “가정파괴범 첫 사형집행”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 행형사상 처음 있는 가정파괴범의 사형집행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날인 10월 31일에 서울과 광주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된 5명의 사형수에 관한 개인별 범죄사실과 재판경위를 다루고 있다.<sup>78)</sup> 그런데 이들의 범행이 이루어진 1982년의 범죄사실의 잔인성을 다시 한번 사회일반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의견상으로 객관적 보도사실의 모습을 띠지만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범죄사실 등에 대해 사회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언론사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sup>79)</sup> 1989년 8월 5일자 중앙일보 14면에서는 하루전날인 8월 4일 가정파괴범 5명에 대한 교수형집행을 “형구 고장 나 집행 45분 늦춰”라는 표제로 소개하고, 형구작동 스위치가 고장 나 그 집행이 40여 분간 지연된 ‘서진 림싸롱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사연을 에피소드식 흥밋거리로 전한다.

1990년 4월 17일 흉악범, 가정파괴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9명에 대한 교수형 집행에 대해서도 개인별 범죄사실을 열거하면서, 그 사형집행의 의미를 해설기사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sup>80)</sup> 해설기사에서는 형벌로써의 사형제도의 당연성을 전

77) 동아일보 2001년 2월 19일자 기사 참조.

78) 1985년 11월 1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각 1면 기사 참조.

79) 동아일보 1985년 11월 1일자 10면 기사 참조.

80) 1990년 4월 17일자 중앙일보 17, 19면, 조선일보 19면 참조.

제한 후 범죄가 극단적으로 흉포화, 잔인화 되어가는 경향에 대해 정부의 강력대응이 시급함을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의 견해를 인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는 충격요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sup>81)</sup> 1990년 12월 4일에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는 “흉악범 5명 교수형 집행 강간살해범 등 올해 두 번째 2명 재심 기각”이라는 표제로 보도하면서,<sup>82)</sup> “반인륜 강력범죄 응징 단호 대처”라는 제목 아래 법무부의 견해를 “이번 사형집행은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양평 일가족 살해사건, 화성 여중생 살해사건 등 흉포한 강력사건이 계속 일어나 강력법을 엄단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모두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소개한다. 1991년 12월 18일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있어서도,<sup>83)</sup>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하게 된 목적은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데서 찾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92년 12월 29일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집행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sup>84)</sup> 법무부의 입장은 “사형 확정자 중 죄질이 극악무도해 사형집행을 보류, 연기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점을 밝혔다.<sup>85)</sup> 1994년 10월 6일 서울 구치소(10명), 대구교도소(3명), 부산구치소(2명)에서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는 “잇단 강력사건 단호한 응징”이라는 표제 아래,<sup>86)</sup> “최근 지존과 연쇄납치 살인사건 등 대형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든 범죄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힌 법무부의 입장을 신고 있다. 이

81) 같은 날 동아일보 경우 16면 해설기사에서 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인 이상혁 변호사의 의견을 기사말미에 신고 있으나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의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82) 1990년 12월 5일자 조선일보 19면, 한국일보 23면,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참조; 이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응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표제 아래 수원지검에서 처리한 양평 일가족 살해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사형구형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83) 1991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23면, 중앙일보 23면,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참조.

84) 1992년 12월 30일자 조선일보 23면, 중앙일보 22면 참조.

85) 1992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참조.

86) 1994년 10월 7일자 조선일보 23면, 31면 기사.

때에도 어김없이 사형이 집행된 주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15명), 대구교도소(2명), 부산구치소(1명), 광주교도소(1명)에서 기존과를 비롯한 19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도형식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이 동일하다.<sup>87)</sup>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형집행은 사형 확정자 가운데 장기 미집행자에 대한 통상적인 형집행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sup>88)</sup> 또한 안구기증의사를 밝혔다가 집행 직전 이를 철회한 사형수들에 대해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의 기회를 저버리고 짧은 생을 끝낸 것이다”<sup>89)</sup>라는 표현을 통해 사형수는 그 집행 뒤에 반드시 자신의 사체나 장기를 기증해서 사회에 마지막으로 속죄해야만 한다는 그릇된 가치관단을 의도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있어서도 일관된 보도형식을 취하고 있다.<sup>90)</sup>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통해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장기 미집행자에 대해 통상적 형집행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밝혔다.<sup>91)</sup> 이전의 사형집행 인원보다 많은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미집행 장기 사형수들의 형집행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배려로 보인다<sup>92)</sup>는 기사를 말미에 실고 있다.

사형집행에 대한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인용한 후,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일관된 보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7년까지의 보도기사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80년대 말부터는 사형에 처해지는 자들이 대개 흉악범죄자들이고, 양심범에 속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집행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의 견해란 것은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파괴사범과 강도살인, 강도강간, 조직폭력 등 강력사범이 근절되지 않아 국민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 흉악사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

87) 1995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88) 1995년 11월 3일자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89) 1995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 39면 기사.

90) 1997년 12월 31일자 조선일보 27면, 대한매일 인터넷기사.

91) 1997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 인터넷기사.

92) 1997년 12월 31일자 중앙일보 22면 기사.

기 위해 정부의 의지는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검찰(법무부)견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일반에 대한 ‘겁주기’로서의 위하와 국가형벌권의 준엄함에 주목하고 있을 뿐,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응보감정의 보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달리 생각하면 응보감정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러한 응보감의 존재를 국가권력이 정면으로 내세울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깊이 있는 성찰이 요청된다.

## 5. 신문사실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우리 신문에서 최초로 사형제도에 관한 사실이 나타난 것은 황성신문이다.<sup>93)</sup> 여기서 황성신문은 법국(法蘭西: 프랑스)의 사형폐지와 그 배경이 된 프랑스혁명을 소개하고 당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형폐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놀랍게도 1세기 전 우리 언론이 바라보는 사형관은 오늘날의 그것보다 훨씬 진보적인 인권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신문매체는 객관적 사실의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사를 토대로 보도사실을 심층 분석하거나 향후의 사회전망을 사시(社是)<sup>94)</sup>에 부합하게 설정하여 사설이라는 해설기사의 형식으로 사회일반에 제공한다. 사설은 언론사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사회일반에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설은 곧 여론의 방향을 선도하고 사회일반의 법감정 형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왜곡될 경우 그 결과는 사회일반의 여론이나 법감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사설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일반의

93) 황성신문 1906년 8월 10일자 1면 사설 참조.

94)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문사들의 사시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 불편부당, 2. 산업발전, 3. 문화발전, 4. 정의옹호; (동아일보) 1.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2. 민주주의를 지지함, 3. 문화주의를 제창함. (중앙일보) 1.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 신속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への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제후생의 신장을 적극 촉구하고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를 구축한다. 3.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민족의 목탁이 될 것을 자기한다. (한국일보) 1. 춘추필법의 정신, 2. 정정당당한 보도, 3. 불편부당한 자세

법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1) 1980년대 : 범죄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응보감정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1980년대 초반 신문사설의 논조는 범죄의 흉포화 경향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촉구하고,<sup>95)</sup> 응보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극형 등 중형에 의한 처벌이란 본래가 사후응징적인 성격의 방책이지 사전예방책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발적인 극악무도의 도량으로 보아선 **극형이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란 감정이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폭한 무뢰한에게 느닷없이 욕을 본 피해자의 기막힌 수치감을 한번 헤아려 보라... , ...그러니 **이런 악마적인 소행들에 대해서 극형이라 한들 너무 중하지 않다 할 정도이다...**”<sup>96)</sup>

“...검찰은 사형이 확정된 가정과괴 강력범의 처형장면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다.** 가정과괴 강력범을 공개 처형하라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 것이며 검찰의 처형장면 공개검토는 그런 공감에서 연유한 것 같다. 검찰은 이미 강력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응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검찰책임자는 특히 가정과괴 강력범에 대해서는 극형을 구형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엄벌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직당국의 추상과 같은 처벌이 강력범들의 횡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있다. ...그들의 인면수심의 **흉행을 보면 공개처형을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아마 그것은 국민적인 요구라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에 때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지도 모른다...**”<sup>97)</sup>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형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사형의 구형과 선고가 많고, 그럴수록 여론의 박수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러한 경향이 우리 민족다운 법의식에 합당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sup>98)</sup>

“...형벌의 진정한 뜻은 범죄의 예방이나 보복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보다 범인을

95) 조선일보 1982년 4월 28일자 사설 “어찌 이런 참사가”; 서울신문 1984년 3월 17일자 사설 “흉악범은 두렵다”; 동아일보, 1984년 3월 13일자 사설, “날뛰는 흉악범”.

96) 조선일보, 1982년 3월 20일자 사설, “강도-추행에 극형 -인간질서 말살행위에 철퇴를-”.

97) 중앙일보, 1984년 3월 29일자 사설, “극악범의 극형”.

98) 한국일보, 1985년 10월 5일자 사설, “대법원의 사형신중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범인을 교화해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범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도상에도 어긋난다...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에서부터 범인의 환경, 교육의 정도, 범행의 수법 등이 참작되어야한다고 밝혔듯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환경이나 사회의 토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발적 살인에 대한 극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신이 앞으로 각급 법원판결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믿어지나 중벌위주의 형사정책을 일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범인의 검거가 범죄예방에 최선의 방법이며 건전한 사회의 토양을 다지는 길이 범죄를 줄이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99)</sup>

대법원의 사형신중론에 근거한 판결이 나온 후 한달이 채 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집행된 사형에 대해 언론은 법집행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자세에서, 다소간 사형이 지닌 형사정책적 한계를 논설하고 있다. 여기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형이 적은 사회, 그리고 사형이 없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뼈저린 자성을 요청하면서, 흉악범죄가 개인의 병리인 동시에 사회병리의 반영임을 역설한다.<sup>100)</sup>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지속되지 못하고,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그 책임을 정부의 민생치안행정력 부재로 돌리고,<sup>101)</sup> 범죄에 대해 전 국민은 전쟁을 선포하는 결의로 임해야 하며, 흉악범에 대해서는 극형을 과해야 한다고 다시 범죄로부터의 엄격한 사회방위로 회귀하려 한다.<sup>102)</sup> 나아가 위정자와 치안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범죄를 차단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103)</sup> 언론매체의 논설의 방향이 여기에 이르다보니, 당연히 강력범죄에 대한 응보감정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엄벌주의를 촉구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흉악범에 대한 응보욕구가 곧 법감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99) 중앙일보 1985년 10월 5일자 사설, “대법원의 사형신중론”.

100) 동아일보 1985년 11월 2일자 사설, “가정파괴범의 사형”.

101) 동아일보 1989년 6월 20일자 사설, “흉악범에 국민이 떨고 있다”.

102) 서울신문 1989년 12월 3일자 사설, “극형의지로 뿌리 뽑힐 때까지”.

103) 동아일보 1989년 12월 6일자 사설, “흉악범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2) 1990년대 이후 : 경직된 응보감정으로부터 논의의 핵심이 배제된 사형 폐지에 이르기까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일반의 법감정 속으로 침전되고 있었으나, 사형제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언론은 엄벌주의와 응보욕구로 무장한 형벌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범죄에 대해서 선부른 인정주의는 또 다른 범죄의 창궐에 기여한다고 지적하면서,<sup>104)</sup> 사형폐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흉악범이 판치는 심각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말’에만 매달려 유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sup>105)</sup> 법과 질서를 안 지키고 무시할 때, 그 대가로 받는 응징이 얼마나 무섭고 엄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립하고 법원의 엄벌의지를 촉구하면서,<sup>106)</sup> 흉악범들에 대한 집행유예를 높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을 가한다.<sup>107)</sup> 집행된 사형에 대해 사형제도가 문제는 있지만 흉악범이 날뛰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징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사형집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설<sup>108)</sup>은 언론매체가 바라보는 사형관을 극단적으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사법이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더구나 이번처럼 일시에 처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 겁을 주어 범죄를 막자는, 처벌의 강화 특히 극형으로 범죄를 줄이고 막을 수 있다는 이른바 일반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사형집행을 공개한다. 사형수의 목숨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과 단말마의 고통을 보여 주어 국민을 공포와 전율의 늪으로 몰아넣는 통치수법의 하나다. 물론 이번의 처형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범죄방지 수단과 통치수법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흉악범을 다시 사회에 돌려보낸다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영원한 격리수단으로 무기복역을 시키자 해도 그 행형비용 등 사회가 져야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104) 동아일보 1990년 4월 1일자 사설, “흉악범과 법감정”.

105) 서울신문 1990년 4월 18일자 사설, “흉악범의 사형집행”.

106) 한국일보 1990년 9월 12일자 사설, “흉악범은 엄벌하라”.

107) 국제신문 1990년 11월 28일자 사설, “흉악범 왜 집행유율(執猶率) 높은가”.

108) 한국일보 1990년 12월 5일자 사설, “흉악범 5명 사형집행”; 서울신문 1990년 12월 6일자, “흉악범 사형집행의 의미”.

없다. 결국 교정 불가능의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형만이 유일한 방법일는지 모른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론이나 상식론이 그렇고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문화의 일반적 시각이 사형의 완전폐지를 주장할 단계에까지 와있는 것 같지는 않다...”<sup>109)</sup>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사형제도와 관련된 사실의 논지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즉 사형제도의 문제는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사형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그만큼 인간적인 문화발전이 기대되는 사회일 것이고,<sup>110)</sup> 또한 사형제도 찬성은 현실론이며, 반대는 이상론에 가깝다고 전제하면서,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다.<sup>111)</sup> 사형제도는 인과응보의 조치이며, 이를 통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자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sup>112)</sup>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되었음을 역설하기도 한다.<sup>113)</sup> 그러나 일부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하고, 시대상황을 고려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sup>114)</sup>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한적으로 사형이 부과되는 형벌의 폭을 줄여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 V. 교육현실에서 형성되는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

### 1. 올바른 법감정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sup>115)</sup> 응답자

109) 동아일보 1994년 12월 9일자 사설, “15명 사형집행의 의미”,

110)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31일자 사설, “사형폐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

111) 대한매일 2000년 7월 26일자 사설, “사형제도를 생각한다.”

112)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28일자 사설, “사형제 폐지, 아직 이른가?”.

113) 대한매일 2001년 10월 31일자 사설, “사형 폐지할 때”.

114) 조선일보 2001년 11월 6일자 사설, “사형폐지, 충분히 논의한 뒤”.

115) 이 결과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1994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방법으로 시행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일부로써 373명(남: 186명, 여: 1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존폐에 관한 의식조사 항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응답한 남학생의 50.3%와 여학생의 65.2%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춘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2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의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일반인 및 범죄자에 대한 위하를, 여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형벌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경직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학교교육의 환경이 단순히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가치중립적 의식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학교교육은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은 학창시절의 교육을 통해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인성과 인간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른 인간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형제도에 대해 형성되는 법감정 또한 청소년기의 교육을 통해 사회일반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은 어떠한 관점에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 법감정이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구명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덕(윤리)과 교과와 사회과 교과의 학습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적 삶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에서 법감정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sup>116)</sup>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과의 성격은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sup>117)</sup>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덕(윤리)과 교과에 있어서는 “국가, 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나아

---

118면 이하 참조.

116)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 및 그 위상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2001), 2면 이하.

11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1998), 28면.

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교과”<sup>118)</sup>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격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회과 교과의 경우는 일반사회를 비롯하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체 11개의 영역 세부 교과목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도덕(윤리)과 교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바른생활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서 도덕,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이러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서 편성하여 일반선택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로 구별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교육의 질과는 관계없이 백화점식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서, 교육과정의 목표로 설정한 인간상을 구현하고 인간존엄에 기초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데 얼마나 기여 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판단 능력과 함께 인간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실에서의 법감정 습득은 올바른 인권관(人權觀)에 입각한 것이라야 한다. 인권이란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습득하는 것인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권의식에 근거한 법감정은 학습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개인이 한 시민으로서 성숙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권리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며, 인권의 보호에까지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 2. 인권교육과 법감정의 상관관계

교육현장에서 초등교육을 거쳐 중등교육을 마치기까지의 기간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되어왔던 까닭에 전인교육을 염두에 둘 겨를이 없다.

11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1998), 28면.

한 인간의 지배적 인성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그가 성년이 되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기이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전제하지 않고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기만을 강요하는 교육은 우리의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상에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교육현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과 진지한 고민을 묻고 답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sup>119)</sup>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모색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는 대학에 입학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할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를 하지 못한다. 가치관이나 정체성의 부재란 곧 이러한 기형적 교육현실이 잉태한 구조적 결함인 것이다. 인간존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문자로서 읽고 쓰는 학습만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형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 구조를 깨닫고 그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철용성 같이 그럴듯한 담론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의식이 학습되는 교육환경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아직도 근대 이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리 잡은 제1세대 내지 제2세대 인권의식의 학습수준, 즉 인권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학습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개인적 인권의 문제에도 충분한 보호와 보장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에서 인권사상이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과 달리 무의식 속에 잔존하는 봉건주의적 사고와 민주주의의 미성숙, 지나친 경쟁사회,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분단 상황 그리고 관용정신의 결핍은 우리의 인권의식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sup>120)</sup>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법과 제도개선의 문제이지만, 그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추동력은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의 문제에 귀결된다.<sup>121)</sup> 특히 청소년기에 왜곡된 가치관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을 받거나 아예 인권교육이라

119) 학교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현대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으로는 김승호, “현대 학교교육의 위기와 그 극복방안”, 『도덕교육연구』 제11집,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1999), 155면 이하.

120)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26-29면 참조.

121) 인권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김종서,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0), 199-202면 참조.

는 것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 법감정이라는 것의 실체는 국가에 의해 조작된 공론의 유행일 따름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여론으로 형성된 성숙한 법감정은 아닌 것이다.

### 3. 법감정 교육의 실재

#### 1) 도덕(윤리)과 교육

초등학교 도덕과는 주요가치 덕목으로서 개인생활의 영역에서 생명존중을,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준법과 타인배려, 정의, 공동체의식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와 학습순서에 있어서 5학년 사회생활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사익과 공익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공익 실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을 생각하게 한다. 공익이 언제나 앞선다는 이러한 학습이 선행되고 난 후 6학년에 이르러서야 개인생활의 영역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친다.<sup>122)</sup> 이렇듯 초등교육과정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가치체계를 주입하고 난 후에 생명존중을 학습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공리성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생명박탈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초등교육단계는 자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의 이행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인지적 미성숙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교육체계를 적용하여 가르치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오늘날 사회일반의 왜곡된 법감정 형성과정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23)</sup>

중학교 1학년 도덕과의 개인생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과 생명존중을 통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가치를 논의하며,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으나, 인권의 역사적 전통과 당위의 측면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지니는 가치를 산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인간존중’이나 ‘개인의 기본적 권리’ 등에 대한 언급이나 강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간존중 개념이 보편적 기본권의

12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교육인적자원부, (1999), 196면 이하 참조.

123)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에서 삶의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자각에 대한 인권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 있는 것으로 강시내, “도덕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향모색-초등도덕과를 중심으로-”, 부산교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참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보호 등과 관련 하여 그 필요성만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다시 개인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으나 생명존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sup>124)</sup> 인권에 있어서도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제도적 밑받침을 강조 하기 보다는 공익의 관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끝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다시 개인생활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도덕(윤리)과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세분화되는데, ‘시민윤리’교과의 현대 사회문제와 시민윤리 영역에서 생명존중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은 환경문제의 윤리적 측면과 결합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심화하여 학습되고 있다.<sup>125)</sup>

우리 도덕(윤리)과 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명인 ‘도덕’과 ‘윤리’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도덕(윤리)’로 변경하였다.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를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윤리)과 교육의 목표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길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체계에 있어서는 그 체계구성이 불연속적이고, 한국적 상황을 무시하고 서구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주입하려는 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도덕과 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의 실천적 인권교육과 교과중심의 이론적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실은 지나치게 교과중심의 이론적 인권교육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과중심의 이론적 인권교육이 규칙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것도 아니다. 교과서에서 인권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협소한 제1세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권리의 측면보다는 의무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sup>126)</sup> 또한 인권교육이 생명존중의 가치가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회생활 영

124) 중학교 도덕과의 의의와 목적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교육인적자원부, (1999), 178-181면 참조.

125) 고등학교 도덕 교과목별 교육과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2001), 20면 이하 참조.

역의 문제들과 동일한 시기에 학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덕(윤리)과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도덕(윤리)과 교과 교육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타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데 있다.<sup>127)</sup>

도덕교육의 본질은 도덕적인 배려에 있다. 도덕적 배려는 개인의 복지와 공정한 대우를 뜻하는 것으로 복지와 공정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동정심에 그 토대로 둔다.<sup>128)</sup> 고통에 대한 공감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정의적 반응이며, 타인과 함께 느끼고, 타인을 위해 느끼는 것이라는 점이 도덕교육의 본질에 녹아있다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내재한 도덕적 원리는 이지적인 차가움뿐 아니라 정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사회일반에 대해 이성적으로 정의로운 것만을 주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따르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애착, 결속감 등이 내재된 도덕적 배려의 바탕 위에 법감정을 생성하도록 해야 한다.

## 2) 사회과 교육

사회과 교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하는 데에 교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sup>129)</sup>

초등교육에서 사회과 교과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의 성격 아래 초등학교 6학년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영역에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과

1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앞의 책, 60면; 특히 중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 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판적 분석과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오재립,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탐색”, 『한국여성학』 제14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1998), 35면 이하.

127)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교육에서의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로는 강진영, “도덕교육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제18집, 교육철학회, (1997), 183면 이하; 고미숙, “도덕교육에서의 정서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제22집, 교육철학회, (1999), 19면 이하.

128) 김성일·최영숙, “청소년을 위한 도덕교육”, 『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1), 106면.

129)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형태에 관해 자세한 것은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학문사, (2001), 83면 이하 참조.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한다.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따라 발견하여 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sup>130)</sup> 특히 2학년 과정의 ‘사회생활과 법규범’이라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와 정의문제를 이해시키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의 맥락에서 준법의 필요성과 준법의 생활화를 학습한다. ‘사회생활과 법질서’ 영역에서는 법생활의 영역을 나누어 구분하고 각 영역의 특징과 기능을 실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시키고 있으나 형벌이 전제되는 공법 영역에서의 형법에 있어서 그 형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형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형이라는 형벌과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발휘하며, 사회 공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sup>131)</sup> 구체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끝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과 교과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영역에서 사회적 쟁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방법을 학습하고 ‘정치생활과 국가’의 영역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집단 간의 이해 차이에서 생겨나며, 이 차이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임을 이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의 일반적 교수법이 사회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형식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해 고정된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사형제도의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성격을 이해시키고 인간존엄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조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현실에서의 여건은 이론적 이상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서의 사회과 교과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습하고 나면, 심화선택교과를 이수하기 전 ‘인간사회와 환경’이라는 일반선택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사회교과가 교양수준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사회 영역의 심화선택교과

130)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체계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259면 이하 참조.

131)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2001), 12-14면.

가 개별학문 내용을 반영한다면, 일반선택교과인 이 과목은 그 중간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심화선택교과의 이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이 교과목의 특성상 인권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심화선택교과 가운데 인권문제와 생명존중에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법과 사회’, ‘정치’, ‘사회·문화’교과를 들 수 있다.<sup>132)</sup> 법과 사회 교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사회과 교과목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중학교 2학년의 ‘사회생활과 법규범’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성격을 나타낸다. 특히 ‘국가생활과 법’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형법과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를 하고,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의 영역에서 법문화와 법의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단원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제도를 이해시키고, 사형제도 존폐론의 쟁점을 파악하여 형사적 정의 실현에 대한 법적 사고를 유도하며, 법감정과 관련성이 큰 법문화와 법의식을 분석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법문화와 법의식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특히 이 교과목에서의 교수방법은 법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고력 형성을 위하여 판례를 연구하고 신문자료나 모의재판 등 다양한 학습자료와 견학 경험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up>133)</sup> 교과목의 평가 요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타당한 절차를 통한 법리를 도출할 수 있는 지 여부, 우리 전통 법문화와 법의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외국 법문화와의 비교분석 가능성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사회과 교과목과 일반선택교과목의 이수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인권과 생명존중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쟁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제도에 관한 법문화 내지 법감정의 사적 고찰과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법문화 내지 법감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과 교과목의 심화학습교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교과목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충족시키

132) 이들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11면 이하 참조.

133) 최근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권장으로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하여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NIE)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이를 제도권 교육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범죄보도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왜곡된 법감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지 못할 것이다. ‘정치’교과에서는 여론과 언론에 대해 그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학습하고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조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대중매체의 활용자세를 가르치고 있으나, 언론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길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과와 설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사회과 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 합의가 부재되어 있어서, 사회현상을 보는 통합적인 관점을 얻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sup>134)</sup> 교과서의 체계에 있어서도 그 표현된 내용만으로는 인권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녀야 할 객관적 본질에 적합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무리한 ‘행간읽기’를 주문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sup>135)</sup>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면 스스로 인권과 관련된 항목을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추출하여 그것을 주제로 한 수업교안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 과목의 다양성 또한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인권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해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문제해결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36)</sup> 인권은 명목적인 덕목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에 있어서 일상적인 의식과 인식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변호하려는 의지 등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sup>137)</sup> 이렇게 고양된 인권의식에 기반하여 형성된 법감정이야말로 정의론의 다양한 덕목을 충족시키는 법감정의 원형일 것이다.

#### 4. 교사의 인권의식과 법감정

교사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그의 가르침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흡인된다. 학생들에 대해 미치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교육의 일 주체

134)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Ⅲ), 227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면희, “사회과 교육의 과제와 전망”, 『사회과교육』 제3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1), 17-20면 참조.

135) 김옥화, “중학교 사회과교육의 현황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제27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8), 44면.

136) 김만곤 외, 사회과 교육의 실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9-10면.

137) 구정화, “사회과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와 교육』 제25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7), 95면.

로서 그 역할과 위치는 중요하다. 만일 교사의 인권의식이 반인권적인 경우 비판력이 약한 학생들은 교사들의 이러한 태도에 자연스럽게 동화하게 된다.<sup>138)</sup> 물론 교육현실에서 제한적 수준의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비전문적이고 타율적인 한계에 있다.<sup>139)</sup>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sup>140)</sup>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에서,<sup>141)</sup> 사회 및 도덕과 교사(183명)를 제외한 인원의 50%이상이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심지어는 교육과정상 당연히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및 도덕과 교사 가운데서도 2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sup>142)</sup>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에 대한 인권연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sup>143)</sup>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권에 대한 교육 역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 교과목과 분리되어 특화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화된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내에서 생명권에 대한 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각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외부강사나 지역의 시민단체(NGO)에 의뢰하는 것이 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질적인 조사결과에서도 교사들의 인권지식이 빈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138) 필자가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된다. 그때 필자의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은 법대 출신의 교사로서 사형제도를 철저히 자신의 주관적인 옹호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수하였고, 그것이 필자에게는 사형제도를 깊이 생각하고 폐지론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필자가 형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될 때까지도 필자의 의식을 지배하였던 점을 떠올리면 교육현실에서의 가르침이 법감정의 형성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139) 교육현실에서 적합한 인권 교수법의 기초원리에 대해서는 국제사면위원회, [96-1] 인권교육의 기법-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9면 이하 참조.

140) 이 설문조사는 중등학교 교사 86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30면 이하 참조.

141) 설문의 내용은 이른바 제1세대 인권에서 다루어진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 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42) 이 조사는 울산인권운동연대가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 초중고 교사 272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태를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143) 교사의 인권교육에 관한 일반연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교,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와 필요성”, 『한국청소년연구』 제29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34면.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중요성의 인식정도에 있어서 다른 사회적 쟁점(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소수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권리보호, 여권신장운동, 환경우선정책, 난민의 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들에 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사형제도 폐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왔고, 두 차례에 걸쳐 다수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청원이 이루어졌던 터라 찬반의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사교사와 고연령층의 교사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나 인권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이지만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권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sup>144)</sup>

교사들의 인권 지식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통적 양식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인권개념이 생소하다는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학교라는 교육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관료체제적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학교의 사회문화적 특성,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독자성을 가진 학문분과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도덕(윤리)교과와 사회과 교과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교육되는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5. 법감정 발달 수준에 관한 이론

전제되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법감정 수준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법감정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발달에 기초하여 도덕성 발달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아제(Piaget)에 의하면 2-4세의 아동(전조작기의 전개념적 사고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타율적 도덕성이 지배하는 시기인 5-7세의 아동(전조작기 직관적 사고단계) 역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으며,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

144) 교사워크숍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초중고 교사의 경우도 62.2%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히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응징적 처벌을 지지하고, 정의관 역시 규칙의 위반은 신이나 다른 자연적인 힘에 의해 언제나 처벌을 받는다는 천벌적 정의관에 의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천벌적 정의관은 도덕적 상대론을 체험하게 되는 8-11세 아동기(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 자율적 도덕성에 눈을 뜨고, 배상적 처벌을 체험하게 되면서 극복하게 된다고 한다.<sup>145)</sup> 따라서 전조작기의 전개념적 사고단계는 자아중심적 법감정이 지배하는 시기이며, 전조작기의 구체적 조작기는 타율적 법감정이 자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율적 법감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이 피아제의 법감정 발달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아제가 주장하는 이 세 단계의 규정에는 법에 관한 지식이 많고 적음, 또는 법에 대한 긍정, 부정 그리고 평가의 내용들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법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보다 더 높은 법감정의 수준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콜버그(Kohlberg)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법감정 발달이 인지적 발달에 의해 중재된다는 입장을 세분화하여 3수준과 6단계의 발달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동의 법감정 발달단계의 결정은 도덕적 딜레마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낳게 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sup>146)</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인습적 수준이 지배하는 1단계(처벌과 복종지향)와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지향), 인습적 수준이 지배하는 3단계(착한 소년/소년지향)와 4단계(법과 질서지향), 후인습적 수준이 지배하는 5단계(사회적 계약과 합법적 지향)와 6단계(보편적 원리지향)로 나눌 수 있다.

전인습 수준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현실세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관계로 형성된 법의식 내지 법감정이란 1단계에서 강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 즉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복종하며, 법은 명령이며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

145)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대해서는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1), 89면 이하; 권준모, 심리학과 교육, 서울: 학지사, (1998), 90-92면; 문용린,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36-38면 참조.

146) 콜버그의 도덕성발달단계이론에 대해서는 Kohlberg, L., "Stage of Moral Development As a Basis for Moral Education", Beck, C., Critter don, B., and Sullivan, E., Moral Education(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0) 참조; 권준모, 앞의 책, 95면 이하; 문용린, 앞의 논문, 38-39면 참조.

고 간주한다. 2단계에 이르러서는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가의 여부에 따라 규범과 가치를 지킬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되는 시기이다.

인습적 수준에서 비로소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여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적 조망이 가능하게 된다. 3단계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 애착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것은 바로 이런 집단에 도움이 되고 이익을 주는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된다. 이때의 법규범과 가치의 준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4단계는 법규범의 정당성을 사회질서유지에서 찾는 단계이다. 만일 사회에 법규범이 없거나 내가 법규범에 이탈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혼란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의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단계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체제유지의 원리가 작용한다.

후인습 수준은 사회를 넘어서 비로소 법감정의 본연적인 모습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5단계는 사회계약의 단계로서 법규범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체제로 파악되며, 따라서 법규범의 준수는 이 계약이 올바르고 유효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맹목적인 규범준수가 이런 계약의 성격이 사회에 이롭지 못하고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법규범을 지키지 않을 것을 결의할 수 있다. 6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가 지배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법규범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와 상위의 가치-이를테면 인권과 인간존엄을 포함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실정법의 규정은 언제나 자연법적 정의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 6. 청소년 법감정의 수준

콜버그의 이론을 기초로 우리 청소년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수준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sup>147)</sup> 우리 청소년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수준은 중학생(2학년)의 경

---

147)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중학생(2학년), 고등학생(2학년) 402명을 상대로 콜버그(Kohlberg)의 법의식 발달론에 근거하여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등학생의 법의식을 6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문용린, 앞의 논문, 41면 이하 참조.

우 대체적으로 전인습수준의 2단계에 머물러 있고, 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즉 법의식이 미분화되어 있으며, 법을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 사고하는 수단적 의미로 파악한다. 고등학생(2학년)의 경우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어서 소공동체의 애정과 감정이입에 근거한 법의식을 보이며, 보호의 대상으로서 법을 파악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그들의 평균적인 도덕감정 또는 법감정은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이며, 인간관계를 시장원리와 같이 생각한다. 정의나 공정성보다는 서로의 등을 긁어 주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하는 도구적인 호혜성의 수준에 머무른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도와주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즉 사회적으로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단지 고등학생의 일부(고등학생 198명 가운데 17%인 33명)만이 콜버그의 4단계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이 4단계에서의 법감정이란 것도 법과 질서지향의 단계로서 권위, 고정된 질서,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것으로 법을 지키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식의 획일적인 사고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sup>148)</sup>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법감정 형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전문가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감정 수준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9)</sup>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전체가 인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도덕적 인식(5단계)이나 옳은 행동은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원리와 일치하는 양심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의 존엄성, 정의, 사랑, 공정성에 근거한 추상적이면서 보편적인 법감정(6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지닌 법감정의 모습이다.

148) 미국의 경우 대략 1단계는 유치원생, 2단계는 초등학생, 3단계는 중학생, 4단계는 고등학생과 성인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법의식(법감정)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앞의 논문, 47면.

149) 동일한 견해로는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서울: 홍문사, (1994), 118-119면 참조.

## VI. 맺음말에 갈음하여: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법적 고찰이 관계되는 여러 측면에서, 명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일반 내지 국민의 법감정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 법감정이란 말처럼 쉽게 오용되거나 악용된 말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오용이라 함은 단순한 옹보적 감정으로 사용됨을 말하고, 악용이라 함은 국가권력이 있지도 않은 국민의 법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오용되거나 악용된 국민의 법감정에 기인한 사형에의 집착은 국민들이 올바른 인권의식에 기반하여 형벌적 의의를 이해하고 형성된 합리적인 신념이 아니라, 복수와 옹보라는 전근대적 관념에 기인한 것이다.<sup>150)</sup> 적어도 현재까지의 사형과 관련한 법감정의 내용이란 옹보로서 사형은 필요하다는 의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형제도에 대한 현재의 법감정이란 정의감의 일 편린에 불과한 옹보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정제된 법감정을 개선하고 법감정의 주체에 대한 확정의 문제 역시 명확하게 논의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이유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성의 근거를 헌법과 헌법정신에 걸 맞는 헌법해석에서 찾지 아니하고 사회일반의 법감정에서 구하게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결정적 책임을 던져 놓았으나 법감정이라는 법률문화적 개념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그 실체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하고, 법감정 형성에 주요한 동인으로 기능하는 언론매체와 교육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언론매체의 왜곡된 범죄보도는 사회적 의미의 경중에 관계없이 기사로서의 가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필요이상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자극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예방과 노력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며,

---

150)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0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과 봉쇄적 태도만을 가져오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제시하는 응보적 형벌관을 대변하면서 강력한 공안시스템의 작동과 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협소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사형제도와 관련된 사회일반의 법감정 형성에도 동일하게 기여하며, 범죄상황에 따라 법감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언론보도의 실제적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sup>151)</sup>

또한 교육현실에 있어서도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권교육의 수준과 그 결과로 고양된 법감정이 적어도 콜버그이론의 4단계 수준을 넘어서 모든 가능성을 결합시키고 그러한 가설을 연역적으로 사고하여 사회일반이 동의할 수 있는 일련의 철학적 원리들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마땅히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도덕성의 본질을 인식하는 인간존중과 정의의 원리가 충족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일반의 법감정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생명존중이나 인간존엄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미흡하고, 경직된 교육환경의 내재적 문제점을 비롯하여,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아직 고양된 법감정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교육현실의 여건이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기형화되어 있고, 법규범이나 가치들에 대해 그것을 당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것이 당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래세대의 주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법감정을 형성하게 될 우리 청소년들의 법감정이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 그대로 재현된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이란 응보감정의 무한계도를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일반의 법감정의 실체는 제대로 형성되거나 이해되지도 아니한 원시적인 보복감정 이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약한 국민의 법감정이 허락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겠다는 판단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형제도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존속시키겠다는

151) O'Keefe에 의하면 특히 범죄보도를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G. J. O'Keefe, "Television Exposure, Credibility and Public Views on Crime", R. Bostrom(ed), *Communication Yearbook* 8, Sage(1984), pp. 513-536.

의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법감정이 개선되면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논변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법청원이 있어 왔으나 이는 결코 형법개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형을 형벌의 목록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sup>152)</sup> 이를 토대로 입법자는 사형을 형벌로서 도입할 수 없고, 법관도 전헌법적인 규범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행정부 역시 이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sup>153)</sup>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일반에 전파된 사형제도 존치론에 근거한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이 일면 정의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값싼 정의’에 의지할 만큼 문명화되지 못한 수준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화국가에서의 정의는 결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감정은 극단적 응보감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언어적 표현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인도감정으로 대체가능할 때 우리는 정의론에 입각한 법감정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

152)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 제102조에서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53) Schmidt/Bleitreu/Klein, Kommentar zum Grundgesetz, 7 Aufl., Neuwied (1990), Art. 102, Rn. 1. BVertGE 18,(112), (116f.), BVertGE 9, 78(88f.)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 권 논 문 공 모

## 국가정책의 강제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공간선택권

-청계천 복원사업 정책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작업공간  
침해를 중심으로-

정 필 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

---

# 목 차

---

---

## I. 서론

1. 문제제기
2. 논문의 구성

## II. 기존연구 소개 및 한계

1. 기존연구
2. 기존 논의의 한계 지적

## III. 연구의 틀

1. 정책과 사람들의 삶과의 관계
2. 분석의 틀: 청계천 작업공간의 구성 5요소

## IV.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비표준 심층면접
2. 피에르 부르디외의 질적연구방법론
3. 심층면접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들

## V. 청계천 복원사업상 인근상인의 작업공간 침해

1. 청계천 인근 상권의 현황
2.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경위
3. 심층면접 결과
4. 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
5. 심층면접 결과 나타나는 특징

## VI. 결론 및 대안

1. 공간선택권 개념
2. 경험전문가(Experts in experience)의 도입을 통한 정책대상자에 대한 생활 조사의 상설화
3. 국가정책 시행상 원칙의 확립

## VII. 앞으로의 과제

부록

참고문헌

---

## I. 서론

### 1. 문제제기

국가의 역할은 태생적으로 국민의 행복증진과 대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근본적으로 국가구성원의 삶을 지속시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존재이유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과거 국가의 기능은 주로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세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민주국가, 복지국가에 이르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구성원들의 욕구 및 소망의 집단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강건해진 현재, 인간은 과연 행복해졌는가? 국가의 역할의 증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인간은 삶을 위협하는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자연재해나 전쟁보다도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개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개인들 하루하루 일상사와 정부정책은 이제 떼레야 떼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탄광업 정책의 변화 및 시장변화로 인한 탄광촌 문제, 그린벨트정책으로 인한 삶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삶의 변화 등에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이룰수록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수록 국가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기간사업이다. 도로·항만 건설사업, 에너지사업, 핵폐기물 매립 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심 재개발사

---

1)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 제10조 후문의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업, 계획도시 사업 등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원치 않는 생활의 변화’가 될 때 정책은 인권침해적인 성격을 띤다. 이때 개인은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삶의 변화를 수용해야하고, 삶의 터전이 침해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자율권의 축소, 인권침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고, 때로는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거대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해당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생활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부안의 핵폐기물 매립지 반대 시위의 경우에서도 정책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위도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7월 12일 부안군수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선언 이후 부안군에서 격렬한 유치반대 시위 등이 계속되면서 여름휴가 성수기인데도 위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sup>2)</sup> 이렇게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되지만 정작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본 논문은 정부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인근 상인들의 삶의 변화를 다룸으로써 그것이 인권침해임을 밝힐 것이다.<sup>3)</sup>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덮였던 하천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사업비(3,600억), 교통지체비용(1,500억/년)이 드는 초대형 사업이다.<sup>4)</sup> 2003년 7월 1일 복원공사가 착공되었고 현재 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 10월 31일 본격적으로 하천 복원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2) 동아일보, 2003년 7월 30일

3) 서울의 역사성 복원과 환경복원이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인 청계천 주민의 삶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의명분에 가려져 무시되는 사람들의 삶을 조망하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도하는 언론의 방식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수준이었다. 이는 국익, 국가사업이라는 거대담론에 시민의 삶이 묻혀버린 것을 뜻하며, 시민들의 삶, 생활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감수성이 요구된다.

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계천 복원사업 중 ‘복원기본계획을 참고,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sub\\_htm/1sub\\_02.htm](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sub_htm/1sub_02.htm)

본 연구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청계천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이다. 청계천은 박정희 정권이래로 다양한 거대국가정책이 자행되었던 각종 실험의 온상지였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6년에 걸친 청계천 복개공사를 기점으로 하여 부대사업으로 청계천 인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968년 도심 쪽 윤락가 전면 철거계획이 있었고, 1969년 9월까지 창신동 방면의 무허가 판잣집을 모두 철거하여 지금의 3.1 서민아파트를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5년에는 청계천 인근의 황학동 일대가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구역이 되었고, 현재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권개발, 송파구 장지동으로의 상권 이전, 강북 뉴타운 개발의 일환으로 주변지역 정리 등 각종 부대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각종 국가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시행 중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둘째,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삶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적시성이 있다. 청계천은 현재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행중인 지역이다. 보통 정책연구는 정책이 완료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미 정책사업이 종료된 후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정책시행과정상 존재했던 수많은 변화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할 때 원하는 자료를 다시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시행과정상 중요한 변화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현 정책에 대한 피드백,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하다.

본 논문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집행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강건화가 개인의 삶을 재구성하거나 혹은 파괴를 가속화시킨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상인들 작업공간상의 자율성 축소, 정서적 공황 등의 문제를 피력하려 한다. 국가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자기운명결정권침해, 행복추구권침해 등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의 변화를 감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분명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계천 사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삶의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인근상인들은 삶의 변화를 감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정책으로 인해 상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sup>5)</sup> 또한 사업과정 속에서 상인과 정부정책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신의 구조와 폭력성도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인권침해의 요소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국가사업에 의해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적응, 혹은 저항해가는 모습으로서 그려질 것이다.

본 논문은 어떤 형식이든 국가에 의해 야기되는 ‘의도하지 않은’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 생활에 대한 위협이자 침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청계천 주변 지역 중에서도 청계천 7, 8가의 황학동 벼룩시장과 청계천 6가의 상권의 상인들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 중에서 특히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파괴되어 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목적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그 안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서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권의 침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상인들에게 청계천은 생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자신들의 정신적, 물질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해 본 결과,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상인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교통체증을 호소하는 등의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다분히 인권침해적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의 기로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저 무력하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끌려가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인권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선택가능성의 부재’, ‘대안의 부재’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으로 인한 삶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인 ‘공간선택권’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주거권 개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는 80년대를 중심으로 불량촌 재개발사업 과정상 발생하는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권 개념은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장시킨 ‘공간선택권’ 개념으로 공간침해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청계천의 작업공간을 중심으로 삶의 침해를 접

5)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인근 상인의 생업권 침해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는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자 신문을 참조할 것.

6)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

근함으로서 기존에 도시빈민의 주거문제에만 한정되어 있던 ‘주거권리의 문제’를 ‘공간권리의 문제’로 확장시키고자 하며 여기에 ‘선택’의 중요성을 결합시킨 ‘공간선택권’을 제안할 것이다.

##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으로 인한 삶의 침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공간선택권’을 제안하는 것이다.

2장은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를 소개하고 있고, 3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틀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교통, 공동생활 이렇게 5개를 작업공간의 구성요소로 하여 청계천 복원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현재의 주거권 개념을 발전시킨 ‘공간선택권’ 개념의 확립 및 확장에 집중할 것이다. 7장에서는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 II. 기존연구 소개 및 한계

### 1. 기존연구

정부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 및 파괴에 대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주로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빈민촌 철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정부의 재개발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 조은·조옥라(1992)의 연구<sup>7)</sup>를 꼽을 수 있다. 저자들은 우선 도시빈민의 일상적 생활 공간을 조사하면서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7) 조은·조옥라(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소득활동과 소비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 가족형태, 이주과정과 직업사, 주민의 사회조직 등은 핵심적인 주제인 빈곤의 재생산과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다. 사당동 주민들의 삶은 재개발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저자들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들을 2년여 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상세히 묘사하고, 그 과정의 사회적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낸다. 또 주민들 사이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며 재개발로 인해 경제적인 여건은 어떻게 달라지고, 주거공간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서술한다. 사당동 연구의 경우 불량주거지를 없애는 재개발사업을 도시빈민의 생활조건의 약화나 도시빈민의 재생산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생활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도시빈곤층의 확대와 지속의 구조로 연결시켰다. 이때 연구자는 불량주거지 재개발과 빈민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하여 도시 재개발정책이 곧 도시저소득층, 또는 빈민층에 대한 정책을 전제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난지도 폐기정책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이호(1996)의 연구<sup>8)</sup>가 있고 강제철거의 폭력성을 고발한 연구로 서종균(1999)의 연구<sup>9)</sup>가 있다.

## 2. 기존 논의의 한계 지적

### 1) 주거빈곤에 한정

기존논의는 빈민층의 주택부족으로 인한 빈민층의 주거빈곤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불량주택 재개발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철거민의 보상대책, 도시빈민층의 형성 혹은 재생산,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 등 주로 재개발 사업 방식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실현하는 것을 들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정책으로 인한 삶의 파괴는 ‘주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 기

8) 난지도가 국가정책에 의해 폐기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이호(1996), ‘난지도와 난지도 주민들의 주거권’, 『도시와 빈곤』, 제 21호, 47-67쪽, 1996. 3, 한국도시연구소

9) 서종균(1999), ‘강제철거의 비인간성과 그 대책’, 『도시와 빈곤』, 제 22호 19-33쪽, 1999. 5, 한국도시연구소

10) 2003년 6월 30일에 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법이 통과됨으로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존연구는 연구대상이 빈민층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 반드시 빈민층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더 광범위한 계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2) 강제철거과정에 집중

1980년대에는 재개발과정, 강제철거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래서 철거과정에서 빚어지는 폭력적 방식을 주로 문제 삼다보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 과정을 짚어내지 못했고 단지 강제철거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 3) 방법론적 한계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와 주민의 관계를 인권대립구도로만 파악함으로써 놓치는 지점이 많다. 특히 도시행정, 도시학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안의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했다.

조은·조옥라(1992)의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일컬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 지역의 해체과정과 주민의 불안정한 일상을 담아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객관적’으로 조사된 주민들의 삶은 결국 ‘변화의 주체’라기 보다는 ‘변화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주민들이 실제로 재개발이라는 정부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는가 하는 측면을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도심지 주민은 재개발이라는 전체 사회의 구조 변동 속에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변화를 강요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구조변동의 일역을 담당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화를 실질적으로 감내하는 개인들을 주체가 아닌 단지 변화의 대상이라고만 인식한다면, 이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활의 단면’을 엿보는 데에 한정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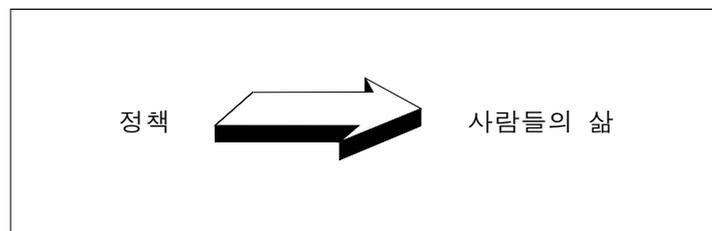
---

11) 연구자들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연구자’라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한 지역의 해체과정과 지역주민의 불안정한 일상생활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생략)”

### Ⅲ. 연구의 틀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청계천 인근 상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그 안의 사람들인 상인들의 삶의 공간을 살려내고자 한다.

#### 1. 정책과 사람들의 삶의 관계



[그림 1] 정책과 사람들의 삶의 관계

[그림 1]은 우리나라 정책시행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책은 많은 경우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이 중앙집권적 특성을 갖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sup>12)</sup>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의한 공공연한 인권침해가 있어왔다.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가족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는 산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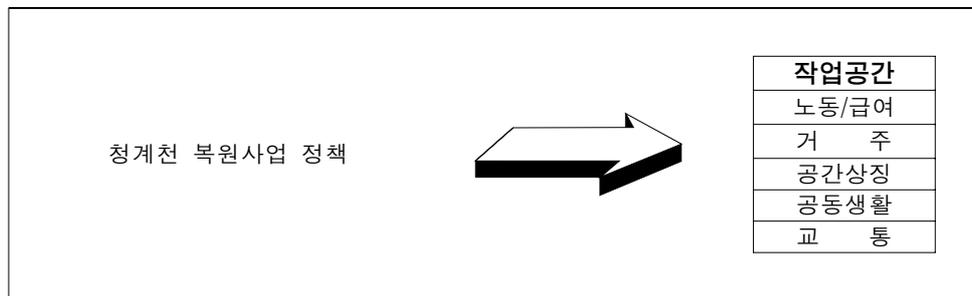
12)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발전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형태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일제 식민통치의 관료 및 경찰기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하고도 강력한 국가기구는 시민사회의 통제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이른바 '과대성장국가'로서 출현하였다.(최장집(1989), 『한국 현대정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89쪽) 한국전쟁과 5·16 군사쿠데타, 그리고 이어진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행정부 중심의 관료주의를 강화시켰으며 관료주의적 정책결정과 집행방식이 주요한 체제운영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임현진(1998),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370쪽) 관료적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방식은 모든 정치적 개입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정치사회의 성원들은 시민사회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 받는다고 보다는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대한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선발되었다.(임현진(1998): 386)

을 위해 공공연하게 불임을 권고해왔으며, 불임시술 증명서가 있는 여성에 한해 한강변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등 강력한 국가정책으로 개인들의 재산권을 통제하고 침해해왔다.<sup>13)</sup> 이 사례는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성,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 2. 분석의 틀: 청계천 작업공간의 구성 5요소

위의 기본 틀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청계천에서 상인들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를 드러내려 한다. 청계천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유하는 청계천 공간은 장사를 하는 공간이므로 ‘작업공간’으로 칭하려 한다. 작업공간은 노동의 공간이며 ‘생업’의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다음은 청계천 작업공간을 접근하는 연구의 기본 시각이다.

청계천 생활공간 침해연구에서 사용할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분석의 틀<sup>14)</sup>

13) 이는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에서 권태환 교수가 언급하였다. 국가의 산아제한정책은 국가정책이 개개인 삶에 미치는 폭력적인 영향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4) 존재기본기능(Daseinsgrundfunktionen)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의 범주를 의미하며 건축학과 공간계획, 공간정책연구, 뮌헨 사회지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건축학에서는 거주, 휴양, 노동, 교통이라는 ‘존재기능(fonctions d’Etre)’이 중요하다면, 공간정책과 사회지리학에서는 ‘거주’, ‘노동’, ‘급여’, ‘교육’, ‘휴양’, ‘교통참여’, ‘공동생활’의 7요소를 중요하게 다룬다.(Werlen, Benno(2000), *Sozialgeographie*, Switzerland: Paul Haupt Berne; 안영진 옮김, 『사회공간론』(2003), 서울: 한울 아카데미, 356쪽)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존재기본기능 7요소를 청계천 상권에 맞게 ‘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의 5요소로 재구성하였다.

### 1) 노동/급여

노동은 청계천 상권에서 물건, 서비스를 파는 행위를 의미하고 급여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상권이라는 특성상 이 두 가지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목이다.

### 2) 거주

주로 거주안정성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거주안정성은 주로 법적점유안정성과 연관이 되는데, 노점상의 경우 법적인 보장이 없어서 항상 철거의 위협이 있다.<sup>15)</sup> 반면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법적안정성이 있으며, 철거의 위협이 없다.

### 3) 공간상징

청계천 상인들은 많은 경우 짧게는 1-2년, 길게는 30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청계천에서 장사를 해왔다. 그래서 청계천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sup>16)</sup> 실제로 청계천 시장, 벼룩시장, 만물시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을 사람들은 생업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애착, 상징성, 역사적 경험들, 공동체적 자존심 등을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따라서 상인들은 청계천 공간에 대한 상징적인 점유를 하는 측면이 있다.

15) 그러나 이들 노점상은 법적 소유권이 없지만 지자체에 의해 점유권이 묵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계 7, 8가에 위치한 황학동의 경우 노점이 번창할 당시 기존 상인들의 민원해결과 보행환경 개선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여러번 시도했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IMF 생계형 노점들 때문에 지자체는 그대로 방임하고 있다.(전우용 외 (2001): 176)

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계천 인근 기계공구상의 경우 본 위치에 입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오래되어 애착이 감'을 꼽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 내부자료, 65쪽) 전기조명, 의료정밀의 경우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역에 대한 애착을 해당지역 입지이유로 꼽고 있다.(같은 책,74쪽)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설문이나 인터뷰를 해본 결과, 청계천로변 바로 면에 입지한 경우 권리금에 억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원단, 포복상권의 경우도 광장시장의 역사 때문에 '오래되어 애착이 감'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같은 책, 82쪽)

17) 황학동의 경우 문공부가 1970년대에 골동품 전문상가지역으로 정식 허가를 내주면서 황학동은 200여 골동품을 중심으로 골동품 전문시장으로서의 명성을 누린다.

#### 4) 공동생활

청계천 시장이라는 상권의 특성이 영향을 준 부분이다. 상권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으며 지역특색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공간점유 및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의 중요성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sup>18)</sup>

#### 5) 교통

청계천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절반정도는 청계천에 살지 않으며 특히 노점상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sup>19)</sup> 따라서 주거지와 상권을 이어주는 교통이라는 요소는 작업공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의 5요소는 청계천 상인들의 행위공간<sup>20)</sup> 요소이면서 동시에 개별 행위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자 할 때 거주하게끔 지탱하는 요소들이다. 즉 상인들은 노동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 IV.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비표준 심층면접

본격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청계천 상인들을 대상으로 비표준 심층면접하는 것을 택하였다.

18) 황학동의 경우 중고품시장의 사회적 유대는 골목중심으로 특히 같은 품목을 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웃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전우용 외(2001): 194)

19) 여기에 대한 정부공식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03년 9월 23일 이루어진 여동남씨와의 인터뷰내용과 김진영씨와의 인터뷰내용에서 추측한 것이다.

20) 행위공간(Aktionsraum)은 뮌헨 사회지리학의 이해에 따르면, 행위공간은 다수의 활동들, 특히 노동부문, 급여부문, 그리고 거주부문의 활동들-욕구와 생활양식에 따른-이 실행되는 지표공간의 일부분을 일컫는다. 행동이 지향하는 공간적 목적지가 나타내는 외적 도달범위가 행위공간의 경계가 된다. 개별적 또는 여러 존재기본기능들과 관련하여 동일한 행위공간을 보여주는 수많은 개개인들은 행위공간집단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Werlen, Benno(2000), *Sozialgeographie, Switzerland*: Paul Haupt Berne; 안영진 옮김, 『사회공간론』(2003), 서울: 한울 아카데미, 361쪽

### 1) 심층면접을 사용한 이유

1980년대까지 사회학에서는 양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질적 방법은 인류학의 몫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사회학 분야에서도 허석렬(1982), 조은·조옥라(1992) 등의 도심 빈민지역 연구나 한상복·권태환(1993), 박명규·이정옥·김필동·정근식(1996) 등의 해외한인사회연구에는 양적 방법과 함께 참여자관찰과 심층면접방법이 활용되었다.(김귀옥, 1999: 20)

본 연구는 청계천 상인들의 생활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질적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질적방법 중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질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얻는 데 최소한 필요한 면접지침을 제시하여 대상자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하는 방법이다.(김경동·이은죽 1992[1986]: 66; 김귀옥, 1999: 2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사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 조사 등의 양적조사는 조사자료가 구조화 됨으로써 연구자 본인의 목적에만 충실한 조사가 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여론조사방법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설문지 방식의 조사방법은 이러한 한계가 두드러진다. 설문지조사법은 조사시간이 단축되고 조사하기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는 객관식 문항으로 이미 짜여진 질문들과 미리 만들어진 답항들을 단지 선택할 뿐이므로 생활변화를 조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방해요소들은 실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정작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기관의 의도를 만족시킬 뿐이다.<sup>21)</sup>

---

21) 서울시에 의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양재천 복원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다. 이때 서울시는 양재천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 내부자료 31쪽)

1. 양재천에는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①처음(37%) ②일주일에 1번(13%) ③일주일에 2번(37%) ④일주일에 3번(13%) ⑤일주일에 4번 이상(0%)
2. 양재천에 오시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①산책(휴식)(75%) ②운동(조깅)(25%) ③인라인 ④기타
3. 양재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음)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그저 그렇다. ④나쁘다. ⑤아주 나쁘다.
4. 청계천을 양재천과 같이 복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57%) ②반대(14%) ③조건부 찬성(29%)
5. 4.에서 ②, ③을 답하신 이유는? ①교통문제(67%) ②상권문제(33%) ③경제적 부담 ④기타

기존의 양적방법은 현실을 통제함으로써 왜곡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통제되어 수식으로 설명된 수치화된 자료 자체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과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질적조사 방법은 양적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지는 취지에서 발전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짜여진 설문항은 응답자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며 많은 경우 질문자의 특정한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표본집단을 가지는 양적설문조사가 5명의 심층면접보다 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설문지응답, 혹은 전화면접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진 사회문제는 것도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심층면접에서는 미리 짜여진 설문항에 답하는 것이 말해줄 수 없는 진짜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몇 명의 시민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 사회문제를 캐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삶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양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

---

6. 청계천을 복원함에 있어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주관식: 양재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62%), 문제점 우선해결 지적(25%), 유람선 다니도록 수로형으로 13%)

위 설문조사는 양재천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양재천과 청계천은 처해있는 조건이 같지 않음에도 마치 같은 조건 하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동일시 하였다. 위 설문지는 양재천이 생태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된 뒤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는 자연스럽게 청계천도 양재천과 같은 생태하천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조사기관은 이러한 기대심리를 설문항에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계천을 양재천과 같이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이르게 된다.

둘째, 표본설정이 편향되었다. 응답자는 모두 양재천을 찾는 사람들로서 이미 레저·여가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양재천을 여가의 공간으로 보는 것에 치우쳐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셋째,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문조사기관의 의도가 드러난다. 설문항 4번은 의견을 묻고 있는 질문인데 선택지는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으로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이 3번 '조건부 찬성'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응답자가 선택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기관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지에 '강요된 선택'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실시기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문조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가 정책 시행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면 정책집행자는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면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 그들의 삶의 지표를 개발하여 수치화 할 경우, 자칫하면 있는 그대로의 생활변화를 포착한다기 보다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자칫하면 잘못된 항목으로 인한 잘못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설문지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들의 생활변화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조사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sup>22)</sup>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책에 의한 삶의 변화라는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관련한 지표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설명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자의 기본가정에만 충실한 연구가 되기 쉽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양적조사 이전에 주민들과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한 ‘생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층면접은 설문지 조사의 치명적인 맹점인 ‘무응답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설문지조사에서는 기타 혹은 무응답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응답이나 기타로 처리되었지만 사실상 그것이 가장 진실된 답변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sup>23)</sup>

## 2) 비표준 심층면접을 사용한 이유

심층면접 중에서도 비표준 심층면접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리서치에 속한다. 즉, 표준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이드만으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구의 틀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서울시청 청계천 복원사업팀의 김수길씨와의 면담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사업 중 상인들 생활조사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하였다.

23)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에 관해 저서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에서 여론조사의 허구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Bourdieu, Pierre(1984), *Questions de soci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문경자 옮김,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1994), 서울: 솔

비표준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심층면접과 달리 질문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약간의 가이드라인만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시작되고, 인터뷰 중간중간에 즉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여 계속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적조사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분리되어 실시되는 반면, 질적조사는 인터뷰상황과 그 결과분석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청계천 상인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융통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적연구보다는 질적방법에 기초한 심층면접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부르디외의 질적연구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였다. 부르디외는 사회학자로서 오랜 현장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년에 자신만의 독특한 질적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국내에서 질적방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양적방법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서를 남겼는데, 『세계의 비참』<sup>24)</sup>에는 인터뷰만 1525페이지에 달한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질적방법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들이 많으므로 본 장에서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 2. 피에르 부르디외의 질적연구방법론

부르디외의 질적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제일주의적인 방법론의 규범 안에서나, 또 감정이 녹아 있어 설명하기 어려운 면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몰아 경계하는 태도 속에서는 그 같은 양케이트 조사가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질문자와 응답자의 구조 속에는 온갖 종류의 왜곡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부르디외는 이 왜곡들에 대해서 알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여 『세계의 비참』에서 시도하는 인터뷰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질문

---

24) Bourdieu, Pierre et al.(1993), *La Misère du Monde*, Paris: Éditions du Seuil; 김주경 옮김, 『세계의 비참 1,2,3』(2000), 서울: 동문선, 노동, 거주, 교육 등 각기 다양한 세부주제로 이루어진 52개의 심층인터뷰와 저자의 코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와 응답자 사이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거리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면 그 관계를 통해 행사될 수 있는 상징적 폭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리 짜여진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의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런 지시도 없이 행해지는 방임형 인터뷰도 아니다. 질문자가 응답자를 완전히 믿어주고 그의 독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응답자의 언어를 따라갈 수 있으며, 마침내 그의 시각과 감정, 사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66)<sup>25)</sup>

부르디외에 의하면 사회학자가 반사작용식이라는 유일한 미덕을 통해 인터뷰 관계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효과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응답자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효과들을 이용하여, 인터뷰라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내린 정의를 강요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뷰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자기 검열을 할 수 있으며, 이 효과는 녹음을 할 경우 더 증폭될 수 있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75)

응답자는 질문자의 질문이나 제안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허용된 권리와 질문자의 요청을 잘 이용하여,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기도 한 자기 표현 작업을 한다. 때로는 응답자는 오랫동안 간직해 왔거나 혹은 억눌러 왔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평소와 달리 풍부한 감정을 담아 가며 이야기하기도 한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79)

이러한 부르디외의 제언은 매우 적절하고 신선한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청계천 상인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되고 감정이 배제된 양적 조사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인터뷰 상황에서 보여준 웃음(만족의 웃음, 허탈함의 웃음 등), 눈물, 분노 등은 결코 양적조사에서는 취할 수 없는 성질의 자료이며, 오히려 구조화 된 설문지 조사보다도 이들의 제스처, 얼굴표정, 숨겨진 이야기 등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이들의 삶을 웅변한다. 특히 예를 들어 청계천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인 느낌과 같이 평소에는 생각

---

25) 외국서중 한글로 번역된 경우 인용쪽수는 한글본의 쪽수를 뜻함

해보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응답자는 상당시간의 침묵 뒤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침묵은 연구자에 의해 가공된 2차적 자료에서는 무참하게 제거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응답자가 평소와는 달리 신중하고도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응답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관찰자가 없어짐으로써 객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현실적인 구성이 있어야만 ‘자연 발생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80) 즉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존재하지만 연구자는 그 텍스트만으로는 응답자가 처한 삶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내용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되, 그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과 구조, 상황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적 구조는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즉, 분석을 할 때,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다음의 기본태도에 입각한다. 피면접자가 면접의 상황에서 어떤 방해요소도 없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 (1) 1차적 자료 및 연구자의 시각의 중요성

통상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원자료를 1차적 자료라고 하고, 이것을 가공한 것을 2차적 자료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1차적 자료보다는 2차적 자료를 많이 사용해왔다. 즉 연구자의 시각에서 원자료를 다시 가공한 자료를 연구의 근거자료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부르디외에 의하면 질문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연구자에 의해 가공된 2차적 자료는 인터뷰 당시 상황과 맥락이 모두 제거된 것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부르디외는 원자료로써 1차적 자료를 활용하되 그에 접근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따로 분리해서 또한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뷰에 기반한 텍스트와 연구자의 시각에 기반한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완벽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큰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인터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문제의식, 주제의식에 기반한 질문항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시각이 인터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뷰상황에 임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느낌, 특정 시점에서 떠오르는 이런 저런 단상들은 각기 중요성을 가지는 동시에 인터뷰내용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써 2차 자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서 피면접자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을 유도하게 한다든지,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등의 인터뷰방식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에 임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과 인터뷰상황 자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독자는 한층 폭넓고 살아있는 인터뷰현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부르디외는 『세계의 비참』에서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말 뿐만 아니라 제스처, 표정, 단어 선택에 이르는 세세한 면까지 연구자의 시선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전개들, 혼란스러운 몇몇 문장들, 뜻 없는 말들, 혹은 (‘에……또’라든지 ‘자……그래서’ 등과 같이) 습관처럼 쓰는 말들을 삭제하였다. 물론 습관처럼 사용되는 말들이 구두로 표현되는 이야기에 독특한 색깔을 부여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경우에는 글로 옮겼을 때 무슨 말인지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런 말들은 삭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어를 바꿔서 적는다든지, 인터뷰 순서를 바꾸지는 않았으며, 생략한 경우는 모두 표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87)

본 연구도 『세계의 비참』에서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생략한 부분은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일어날 수 있는 자료의 왜곡을 줄이고 객관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 중에는 인터뷰 상에서 응답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사투리 등을 적극 반영하려 하였으나, 독자에게 이해가 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문장들은 다소 단어를 변형하였다. 그 대신 원래 문장은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또 각 사례 처음에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독자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였다.<sup>26)</sup>

26) 이는 부르디외가 『세계의 비참』 인터뷰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다.

## (2) 뜻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의 중요성

부르디외에 의하면 질문자는 응답자로부터 아주 특별한 그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의사 교환에 제약을 주는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예컨대 시간적인 제약, 응답자가 인터뷰 상황에서 느끼는 거북한 기분이나 부족한 점, 요구사항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찌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언제라도 튀어나올 기회만 기다리고 있던 그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부르디외, 김주경 옮김, 2000: 1474)

이런 특별한 이야기는 응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뜻밖의 이야기는 청계천 상인 인터뷰에서도 발견되었다. 김철주(남·40)씨<sup>27)</sup>와의 인터뷰의 경우,

“옛그제는 밤에 여기서 천막 지키는데, 비가 오고, 춥고, 바람도 불고…… 여기 밤에 차가 엄청 빨리 달려요. 천막이 다 휩쓸려 갈 것처럼……(잠시 침묵)……옛그제 우리 아들 생일이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 내가 마음이……(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인생 참 처량하더라고……(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말을 잇지 못한다.)……(침묵)……요새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예전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거든. 근데 요새는 이해가 가. 나 같아도 그럴 맘 생기겠더라고……”

위 인터뷰 내용은 특별한 질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대목이다.<sup>28)</sup>

응답자의 자발성은 비표준 심층면접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요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된 응답들은 결국 설문지조사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3. 심층면접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들

27) 청계 7가에서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상을 하는 40세 남성이다. 본 연구에 등장하는 심층면접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28) 위 이야기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당시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심도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기본 입장이다.

질적연구는 적은 수의 사례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본 심층면접은 남/여, 노점상/상가상인, 상인/공무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sup>29)</sup>

노점상의 경우 불법점유이고, 상가상인은 합법적인 점유라는 차이점이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의해서 침해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점유형태가 다른 집단을 선정함으로써 그 둘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노점상과 상가상인을 동시에 인터뷰함으로써 법적 점유권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기존에는 빈민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김효원(남·53)씨<sup>30)</sup>의 경우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사도 잘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보면 빈민층이라기 보다는 중산층에 가깝다. 또 상인들로만 논의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관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면접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행정집행자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 V. 청계천 복원사업상 인근상인의 작업공간 침해

### 1. 청계천 인근 상권의 현황<sup>31)</sup>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변의 범위를 청계1가부터 청계9가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점포는 현재 62,783개이고, 상인의 수는 213,462명이다. 노점상은 총 470개(주말 940개)로 조사되었다.

상권은 산업용재공구와 의류 및 부자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용재공구지역의 경우 6·25 이후부터 형성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업종으로 상인의 90%(약 19만명)가 임차상인이다. 대부분은 최소 20여년 이상 영업활동을 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연대성이 강하다. 기계·공구상의 경우 점원생활

29) [부록 1]에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30) 청계 8가에서 슈퍼상가를 운영한다.

31)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의 9쪽부터 18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10-20년을 거쳐 점포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상가의 경우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아세아전자상가의 경우 전자산업의 메카라는 긍지를 지니고 있다. 의류중심의 상권의 경우 광장(1905년 개업)·방산·평화시장 등 역사가 오랜 재래시장이 대부분이다.

## 2.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경위

[표 1]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경위

일 시	내 용
2002년 10월 16일	청계천 복원 사업 발표
2002년 12월 16일	청계천 복원 반대 상인들 차량 시위
2003년 1월 2일	청계천지역 주민·상인협의회 발족
2003년 2월 20일	시민공청회
2003년 7월 1일	공사착공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되면서, 공약이었던 청계천 복원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24일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32)</sup> 설문조사는 청계천로 1500명 상인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형태였다. 형식은 설문조사였으며, 정부는 업체의 특성, 반대강도, 복원반대 이유, 요구대책에 대한 주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반대가 심한 업종은 신발상가와 공구상가였으며 청계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교통혼잡이 반대원인이었다. 특히 신발상가의 경우 복원공사 시 일시적인 영업중지, 점포 강제이전 가능성이 반대원인이었고, 공구상가의 경우 복원후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인근 동종업종의 이전 및 강제이전의 가능성이 반대원인으로 조사

32) 1) 민원대책 수립을 위한 상인 설문조사 시행, 2002년 10월 24일 ~ 2002년 12월 2일 청계천로 12개 구역 1,500명 상인대상

2) 설문조사 결과

업체특성 : 주업종은 판매, 매출액 4천만원/월, 임대 90%

반대강도 : 신발상가, 출판인쇄, 공구상 반대강도 높음

복원반대이유 : 교통혼잡심화, 영업위축, 동종업종이전 등

요구대책 : 주차공간확보, 주변도로정비, 대체지 마련 등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63쪽

되었다.

그 해 12월 16일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차량시위가 있었다.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거리에서 ‘청계천 복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가 12월 16일 오후 차량 20대를 동원해 서울 청계 9가~1가 구간을 2시간 동안 행진하며 청계천 복원 반대 차량 시위를 벌였다.<sup>33)</sup> 다음해 1월 2일 청계천지역 주민·상인협의회가 설립되었다.<sup>34)</sup>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상권대책은 공사 기간 중 영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를 지원하다고 되어있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이것은 기본방향일 뿐 구체적인 사안과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상인들은 자신의 앞날이 걸린 문제를 막연해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위 상권대책은 노점상은 제외된 것이어서 노점상으로 이루어진 명물거리의 사실상 폐쇄될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이주지원 대책의 경우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로 제안했으나, 이미 장지동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주민들은 삶의 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다.<sup>35)</sup>

서울시는 2003년 11월 중순부터 1천여 노점상들이 몰려 있는 청계 3~9가 2공구 구간의 보도 축소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벼룩시장·평화시장·신평화시장 일대 보도 폭을 현재의 5~7m에서 3m로 절반을 줄여 청계천 우수관을 묻는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줄어든 보도 폭에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결국

33) 조선일보, 2002년 12월 17일

34) 서울시에서는 2002년 9월 18일 청계천 복원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시민위원회 안에 정작 청계천 인근 상인과 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은 청계천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이다.

- 시공무원: 9명 (7.7%) - 시 퇴직공무원: 6명 (5.1%) - 시의원 : 12명 (10.3%)
- 시정개발연구원 : 8명 (6.9%) - 언론인 : 12명 (10.2%) - 시민단체 : 19명 (16.3%)
- 학계 : 32명(27.6%) - 전문가 : 12명(10.3%) - 기타 : 6명 ( 5.1%)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청계천 복원사업 참조

35) “이유탉 송파구청장이 서울시의 청계천 공구상가 장지지구 이전계획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송파구의회가 공구상가 송파구 이전 반대 및 문정·장지지구 균형개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5일 폐회된 제1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정·장지지구 28만평은 서울시가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개발을 유보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15만평 규모의 상가단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상가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이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http://council.songpa.seoul.kr/> 송파신문, 출처: 송파구의회, 작성일: 2003년 7월 10일

좌판을 펼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노점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sup>36)</sup>

- |   |
|---|
| (1) 계속 영업을 희망하는 업종 -----> 영업 불편 최소화 대책<br>-----> 상권 활성화 대책(재개발 등) |
| (2) 이주를 희망하는 업종 -----> 이주지원 대책                                    |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http://www.metro.seoul.kr) 청계천 복원사업 상인대책 참조

### [그림 3] 서울시의 상권대책 기본방향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상 나타나는 정책집행의 특징은 정책집행의 일방성·강제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상인 대책은 기본 방향부터 어긋나고 있다. 2003년 10월 15일 심층면접을 위해 청계 6가를 방문했을 때 면접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와 LG건설<sup>37)</sup> 측은 청계 6가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에게 주변 도로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존의 신발가게 상가와와 갈등이 있었을 뿐이다. 현재 노점상은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 중앙에서 임시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매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복원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도 비상식적인데, 2003년 10월 15일 현재, 새벽 1,2시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거리의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밤새워 대기하다가 포크레인을 저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심층면접 결과

청계천 상인의 심층면접은 황학동 벼룩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청계 6, 7, 8가의 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작업공간의 변화를 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 이렇게 5 요소로 분석하였다.

36)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

37) 청계천 복원사업은 구간별로 서로 다른 건설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청계 6가의 경우 LG건설이 공사를 주관하고 있다.

### 1) 노동/급여

청계천 고가도로주변은 주로 상권이므로 작업공간 5요소 중에서 노동/급여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청계상인들, 특히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에게 있어서 노동/급여는 생업, 생존과 연결된다. 노점상을 하는 여동남씨(여·65)의 경우 “여기가 밥줄인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었다.

#### (1) 여동남씨: “전혀……지금 생계가 막막하지”<sup>38)</sup>

우선 여동남씨의 사례를 보자. 여동남(여·65)씨는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고 있다. 청계천에서 10년째 장사를 했으며, 현재는 생활용품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천 원짜리 팔아서 2, 3백 원 남는 정도 규모의 노점이다.

인터뷰 당시 여동남씨는 인도축소 반대 시위현장에 있었고, 인터뷰 중에도 질문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비난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특히 “없는 서민만 죽이는 거지”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난을 주로 했다. 그런 반복적인 비난은 시위의 영향이라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어구들이 평소 때의 생각을 담고 있다기 보다는 ‘시위’라는 특수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서민, 국민이라는 각기 다른 단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없는 시민’, ‘국민 다 죽이는 거여.’ 등의 대목에서 알 수 있었다.

----- 노점상에선 어떤 물건을 파시나요?

**여동남** 각자가 다 틀리니까. 나는 생활용품 팔아요. 천 원짜리.

----- 이게 지금 철거가 7월 1일에 시작됐는데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지셨나요? 장사라든지.

**여동남** 전혀. 지금 생계가 막막하지. 전혀 (장사가) 되지가 않고, 서울 시민들은 우리 뿐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천 원짜리 팔아서 이백 원 삼백 원 남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물이 내려가면 무슨 물이 내려가겠어. 여기가…… 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라고 공약 내세우고,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기 식이지.

(중략)

----- 제가 여기를 자주 오고요. 6월에 복원하기 전에 왔었거든요. 사람 참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38) 부르디외도 저서에서 각 인터뷰별로 소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취한다. 본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임을 밝혀둔다.

**여동남** 시민들 인식이, 청계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장사꾼이 없다. 명물시장이잖아요. 여기가. 명물시장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오죽하든 “거기 헐려서 어떡하냐..” 하면 “우리 (거기서 장사를) 해” 그러면, “거기가 뭐가 있어서 하나, 어떻게 하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거기가 없어진 걸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여동남씨의 경우 청계천이 생계공간이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명물시장이 사라진다는 인식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잘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급여에 타격을 받는 건 노점상 김대식(남·54)씨와 김철주(남·40)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 김대식(남·54)씨<sup>39)</sup>

----- 요새는 장사가 어떠세요?

**김대식** 전에 하던 거 여기서 해도, 전에 팔던 사람 한사람 파는 것 보다 못 팔아. 전체 파는 게.

(3) 김철주(남·40)씨<sup>40)</sup>

----- 장사는 어떠세요?

**김철주** 하루에 만원, 이만 원 벌기도 요새 어려워요.

## 2) 거주

거주는 주로 안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사하는 공간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노동/급여 요소에 버금가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인에게 있어서 거주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밥벌이’가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하므로, 이는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으로 직결된다.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의 경우 거주안정성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는 반면, 노점상의 경우 평소에도 단속을 경험했고, 고가도로 주변 노점은 사실상 철거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주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특히 청계 6가의 육교 위

---

39) 육교에서 그릇 파는 노점을 하다가 9월 15일 육교철거와 함께 노점상도 철거되었다. 현재 육교아래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40) 청계 7가에서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노점의 경우 2003년 9월 15일에 자진철거 형식으로 이미 철거를 마치고 기존 노점들은 육교 아래,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거주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1) 김대식(남·54)씨: “인도 작업을 하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노점상 김대식(남·54)씨는 낙산 위에서 살고 있으며, 청계천에서 장사를 시작한 시점은 IMF 때 하던 일이 실패한 이후이다. 청계 6가 육교 위에서 노점을 하다가 올해 9월15일에 노점이 철거되어, 현재는 육교가 있던 자리 아래이자 청계천 복원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다른 노점들과 함께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계 6가의 육교 철거 및 상인들 대책은 LG건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5일 철거당시 LG건설에서는 육교 위 노점상인들을 철거 후 고가도로변 인도위에서 장사하도록 해준다고 했었다. 그러나 막상 철거가 되고 난 후 노점상과 인근 신발가게 소매상과의 마찰이 생겼고, 결국 육교 위에 있던 노점상은 공사현장 바로 옆인 도로 한가운데 모여서 현재 장사중이다. 인터뷰 당시 육교에서 노점상을 하던 아주머니 5명 정도가 옆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으며, 인터뷰 하는 도중 노점상 연합회 집행부 회원이 와서 지금 서울시와 LG건설과의 협상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다음은 김대식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거주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 청계천 복원 때문에 청계천 철거를 했는데, 자진철거.....

**김대식** 우리는 근데 LG회사 측에서는 육교에서 내려가면 양 쪽 사이드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던 말이야. 서울시에서는 단속은 안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노점상을) 묵인 해준다고 했던 말이야. 일단 철거하고 내려오니까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LG 회사 측에서 이놈을 못 들어내는거야. 그놈을 들어내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도 작업하기 위해서 저놈을 안 들어내는거야. 인도 작업 할 때 어차피 노점을 다 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작업을 안 하고 저놈을 안 들어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인도 작업 할 때 (완전히) 들어내려고.

----- 그러면,평소 때는.

**김대식** 우리가 속은 거지, 고놈들한테 완전히.

-----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지장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김대식** 일단 육교에서 내려오면 그리로 들어가기로 해놓고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야. 지금……속았다니까. 완전히.고놈들한테

----- 평소엔 단속이 있었나요?

**김대식** 그렇죠.

----- 단속은 어떤 식으로……?

**김대식** 우리 물건 뺏어가고 그러죠. 물건을.

----- 얼마마다……

**김대식** 요즘엔 덜한데, 옛날에는 심했지. 옛날에는 다 뺏어갔지. 벌금 물어야 가져오고……(생략). 인도 작업을 하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 저쪽에서는 (인도 작업)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김대식** 응, 그래서 계속 막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자칫 생각하면 김대식씨의 경우 다른 3명에 비해 거주안정성이 가장 위협받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다른 노점들도 아직 철거되지 않았을 뿐, 앞으로 철거이후의 대책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막막한 상황인 것은 김대식씨의 사정과 비슷했다. 여동남(여·65)씨와 김철주(남·40)씨의 경우를 보자.

(2) 여동남(여·65)씨<sup>41)</sup>: “어느 귀퉁이라도 하게끔 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게 당연하거 아니여.”

**여동남** 서울시에서는 없는 시민에게는……전혀……(배려를 안해.) 이 (장소) 마저 뺏을라고, 저 넓은데, 뭐 하러 들어와. 그래놓고 시민한테는 2차선 내네, 3차선 내네……(생략) 어느 귀퉁이라도 하게끔 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여. 세금 다 받아먹고,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고, 바리케이드 친다, 뭐 친다, 그러질 않나. 너무 우리나라가 보면, 정치인들, 도둑놈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건 잡으라 그러면 못 잡고, 없는 시민들만…….

(3) 김철주(남·40)씨<sup>42)</sup>: “애는 커가지, 장사는 안 되지, 갈 데는 없지.”

**김철주**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백수도 있어. 일년 365일 나오는 백수를 내가 아는데, 하루라도 안 나오면 ‘오늘 왜 안 나오나…….’ 한다니까. (침묵) 애는 커가지, 장사는 안 되지, 갈 데는 없지.

41) 청계 8가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42) 청계 7가에서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4) 김효원(남·53)씨: “적응해서 살아야지. 암울하고, 불안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노점상이 아닌 상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그러하다. 김효원(남·53)씨의 경우 현재 청계 8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데, 자기소유가 아니라 임대한 상가이다. 김효원씨는 30년 전 사우디에서 돌아온 후 청계천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을 하다가 1988년부터 삼일아파트 1층의 소매 식품상가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효원씨는 삼일아파트를 소유하여 오랜 기간 살다가 집을 팔지 않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금을 용자받아서 작년 5월 남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상태이다. 김효원씨는 노점이 아닌 상가를 운영하므로 서울시의 상인대책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 상가를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에 김효원씨도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간다고 보다는 강제로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상가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막연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을 대화 곳곳에서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당장은 이사를 가게 되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금 현재로서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더 증폭된 듯 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청계천 인근에 롯데건설이 주관하는 현대식 주상복합건물이 생길 예정인데, 지금 김효원씨가 하고 있는 식품장사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있었으며, 앞으로 직종을 바꾸게 되면 어떤 직종을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 상가의 이주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김효원** 송파구 장지동이랑 잘하면 문정동까지 해서 이주한다고 해. 여기 가게가 (노점을 제외한 수) 46000~47000개<sup>43)</sup> 정도 되는데, 이들은 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람들이야. 가게 있는 사람들이 가게를 옮기는 거야. 세입자들. 근데 상가소유주들은 조합에서 알아서 평수만큼 처리해 줘. 지금 이런 사안들을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

43) 실제 청계천로 상가의 수는 62,783개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서 협의 중이야. 물론 나도 위원회의 일원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수에 상관없이 서울 시에서 그리로 보내준다는 거야. 단체로 가면 시장형성 빨라지니까. 뿔뿔이 가면 잘 안될 것이 말이지. 근데 사실 공사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지. 장사하고 싶 되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당장은 가게 되면 피해가 되니까. 그리 가되 상인은 가게를 무상으로 달라. 뭐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청계천이 상인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인데 말이야. 권리금 다 포기하고 하는 거라고.

----- 딱지는 나왔나요?

**김효원** 딱지 아직 없어. 그게 소유권을 시공사에 넘기는 건데. 관리감정평가가 지금 3500 이거든. 관리처분. 이주비 5000만원을 받고 이주를 하는 거야. 4000만원은 무이자고 1000만원은 이자 내면서. 근데 이거 다시 이주 들어오면 반납해야 해. 모르는 사람은 공짜인 줄 아는데 사실 공짜 아니야.

----- 공사가 완료 되도 사모님은 계속해서 슈퍼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효원** 근데 집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지. 롯데가 엄청 커다란 유통인데, 가격경쟁이 되겠어? 우리가 100원에 팔면 거기선 70원에 파는데. (여기 시장이) 없어지고 주상복합이 생기는 거야. 적응해서 살아야지. 암울하고, 불안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잠시 침묵) (생략)

### 3) 공간상징

청계천 7,8 가 부근상권은 황학동 도깨비시장이라 불리며 그 인근 상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따라서 청계천 인근 상인들은 청계천 내지는 황학동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청계천이라는 공간이 이들에게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감내해야 할 삶의 변화 중에서 공간상징요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공간을 생계장소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 2의 고향’과 같은 애착심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상인들은 심리적 충격, 정서적 공황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4) 황학동 벼룩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공간정보는 황학동사무소 홈페이지의 ‘우리동소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계천 7가와 8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벼룩 시장은 일명 도깨비시장 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 중에서도 옛 풍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중략) 이곳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골동품을 비롯, 중고가구, 가전제품, 시계, 보석, 피아노, 카메라 및 모터변압기 각종기계류 공구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점포 수만도 1천여 개에 달한다. 이시장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만물상들의 집합소여서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다.”(황학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우리동안내’에 소개된 글, [www.junggu.seoul.kr/junggu3](http://www.junggu.seoul.kr/junggu3))

(1) 김대식(남·54)씨<sup>45)</sup>: “우리는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김대식씨의 경우 청계천 공간 자체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찾기는 어려웠고, 단지 생업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 청계천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 동네는 삭막하다.’ 아니면 ‘정이 넘친다. 내지는 청계천에서 장사를…….’

**김대식** (한참을 생각한 뒤에) 우리는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허허. 너털웃음)

(2) 김철주(남·40)씨<sup>46)</sup>: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있었지.”

김철주(남·40)씨는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다. 집은 월계동이며 청계천에서 6년째 노점상을 하고 있다.

김철주씨의 경우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 공간의 붕괴는 곧 생업공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철주** 여기 예전에는 그래도 장사하면 근근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거든. 근데 나 이 장사 하면서 빚도 좀 있어요. (생략)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있었지. 나도 그 전에는 백수였거든.

상가를 하는 경우, 공간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인도가 축소되고 노점상이 철거될 상황이 되자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 정서적 공황은 작지 않은 것이었다.

**김철주** 처음 왔을 때 장사가 잘됐어요. 외국인, 흑인, 아프리카 저기 저 호텔에 외국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조선족도 있고, 일요일이면 외국인이 전체의 30,40프로예요. 서울시민들도 구경나오고요. 인천에서도 와요. 못 보는 물건들 보러. 근데 요새는 썰렁해요. 밤새고 신경 날카로우니까 싸움도 많이 나고, 저번에는 낮 12시에 포크레인 들이대서 저지했어요. 공사 앞졌다고, 해 놓고선 회원들이 가서 막고…….

토요일 일요일은 풍물거리잖아요. 나 어렸을 때 물건도 있고, 단골도 있어요. 필

---

45) 청계 6가에서 그릇 파는 노점상

46) 청계 7가에서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리핀 이런 외국인들이 선물 사러 오고, 일요일마다 나도 재밌다고 보는데, (노점 철거하면)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고…….

(3) 김효원(남·53)씨<sup>47)</sup>: “노동하면 노동의 대가가 나오는 곳이거든”

김효원씨의 경우 집이 청계천 삼일아파트이고 작업장도 청계천 벼룩시장인 데다가 3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머물러서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 청계천에서 얼마나 머무셨나요?

**김효원** 30년 됐지. 내가 이 동네 아주 잘 알지. 사우디 갔다가 서울서민으로 벌어들여려고 여기 왔어. 당시에 800만원에 삼일아파트 사서 들어왔어. 600이 전세였을 때야. 내가 지금은 상가에서 장사하지만 그때 노점 했어. 과일장사. 그래서 그거하면서 결혼하고, 큰애 작은애 낳았어. 고향은 전남 남원이야. 여기가 제 2의 고향이 된 거지. 여기서 애들 대학 둘 다 보내고, 고향 이상이야.

----- 이곳 청계천에서 가게를 하게 되신 이유는요?

**김효원**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노동하면 노동의 대가가 나오는 곳이거든. 옛날에도 노비, 서민들이 살았었잖아.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다고, 강남 같은 동네는 향락이잖아. 여긴 아니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유동인구도 많고, (난 여기가) 근대화 기술 발전의 원조라고 봐. 난, 손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 근로의 보람이 있고, 노점을 해도 말이야.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 애들 다 크고, 솔직히 난 대학교까지 갈 꺼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애들 대학도 시키고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갔거든.

(중략)

**김효원** 부부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 안 그래.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 달라. 나는 여기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해. 여기서 번 돈으로 살아왔는데, 말하자면 이 집이 뿌리인 셈이거든. 성장도 여기서 했고, 공사 완공되면 나머지 차액만 더 내고 들어오면 되거든. (생략)

김효원씨의 경우 나름대로 청계천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긍지가 느껴졌다. 우선 삼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게를 무난히 꾸려나갔으며, 두 명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청계천 상권은 이들에게 단순한 생계수단만을 의미하는 것

---

47) 청계 8가에서 슈퍼상가 운영

이 아니다. 특히 청계천을 ‘제2의 고향’이라 여기며 자신의 ‘뿌리’라 여기는 김효원 씨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청계천은 이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라고 볼 수 있다.

#### 4) 공동생활

공동생활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공유하는 행위공간집단으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청계천 상권은 상가와 노점상이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지만, 명물거리, 벵룩시장이라는 상권의 특성상 노점이 있어야 비로소 재래시장다운 맛이 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로 가족 같은 친밀감이 형성되어있는 공간이다.

상인들끼리 서로 친분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음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김철주(남·40)씨<sup>48)</sup>: “어디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오면 우리 치러온 줄 알고 움찔하고.”

**김철주** 옆 사람 화장실 가면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나 몰라라 안 해요. 가족 같으니까. 도와주고, 누가 물건 집어가면 해결도 하고, 노점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상가도 처음에는 우리 투쟁하는데 같이 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 노점이 안 되면 상가도 안 되는 걸 안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주로 노점 보러 오는 거니까요.

(중략)

**김철주** 옛날에 즐거운 건 다들 어디 갔는지, 정겨웠던 거 어디 갔는지. 다들 상인들이 신경이 곤두서있어. 어디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오면 우리 치러온 줄 알고 움찔하고, 전경차만 와도 공권력 투입하려는 건 줄 알고…….

----- 네에.

**김철주**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잡아가면 잡혀가야 하고, 장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배운 건 없지만 행복추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존권도 있고.

김철주씨에 의하면 요즘 상인들이 철거위험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고, 손님도 줄었기 때문에 상권이 예전과 달리 긴장상태라는 것이 복원 전과 달라진 점이다. 복원 전의 즐거움과 정겨움이 이제는 복원으로 인한 긴장, 피곤함으로 바뀌어 있

---

48) 청계 7가에서 유행상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음을 볼 수 있다.

## 5) 교통

상인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은 주로 교통체증이었다. 노원구 중계동에 살면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여동남씨와 낙산 위에 살면서 차로 출퇴근을 하는 김대식씨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1) 여동남(여·65)씨49): “말~도 못하게 막혀. 진짜 여기 한번 오려고, 진짜.”

----- 교통은 옛날하고 어때요?

**여동남** 말~도 못하게 막혀. 진짜 여기 한번 오려고, 진짜.

----- 버스 몇 번 타고 오세요?

**여동남** 10번 타고 오는데, 노선이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 빠져 나오려면 진~짜 막 육이 저절로 나와.

----- 옛날에는 몇 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여동남** 옛날에는 안 막히면 40분 이면 와요, (지금은) 여기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1시간 반. 청량리에서 내려갔고, 지하철타고 올 때가 있어요. 막히니까. 1호선 타고.

----- 상당히 걸어야 되잖아요.

**여동남** 그게 빠르니까. 너무 막히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버스)기사들도 육을 저절로 해. 지금은 2차선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때가 있어. 그럼 차안에서 열리는 거여. 없는 서민만 다 죽이는 거지 뭐.

(2) 김대식(남·54)씨50): “그때보다 어쩔 땐 30분 더 걸리는 때도 있고.”

----- 집에서 출퇴근할 때 걸어서 다니세요?

**김대식** 차타고 다니죠.

----- 얼마정도 시간이 더 걸리세요?

**김대식** 그때보다 어쩔 땐 30분 더 걸릴 때도 있고. 우리 집이 낙산 꼭대기거든. 걸어서 내려오면 한 10분이면 와요. (차타면) 한 이, 삼십분 넘어서 걸리니까.

----- 오늘은요?

**김대식** 차타고 왔죠.

----- 차가 막혀도 그냥..

**김대식** 그냥 타고 왔죠.

---

49) 청계 8가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노점을 한다.

50) 청계 6가에서 그릇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음

#### 4. 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

(1) 김수길(남)<sup>51)</sup>씨: “청계천 상권은 사양산업입니다. 바꿀 시점이 온 거죠.”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팀의 김수길씨와 인터뷰를 하였다. 본 인터뷰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혀둔다. 김수길씨는 인터뷰 기간 중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만 하며, 주변상권 재개발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송파구 장지동 대체상권지도 서울시에서 이주를 유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인대책에 있어서 상가 상인의 경우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노점상의 경우는 대책이 없다고 하였다.

----- 노점상 대책은요?

**김수길** 노점상은 대책이 없는 게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대책은 없습니다. 노점상은 양성화하거나 없애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요새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형 노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응답자가 자료를 가지러 가느라 5분간 자리를 비움)

**김수길** 청계천을 복원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남북간의 지역균형개발 외에도 서울시의 뜻은 공식적인 것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맥락이 있는데요. 청계천이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서울의 중심을 복원함으로써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예전이랑 주변 환경을 같게 할 순 없지요. 깨끗하게 복원하면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청계천만 복원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개발 안 하는 게 낫지요. 청계천 복원사업이 상인들의 개발과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라고 해서 이동시킬 것으로 아는데요.....

**김수길**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라고 말하지만,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대체지로서 유도하는 것이지요. 청계천 주변 상가는 안 건드릴어요.

----- 그러면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수길**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손을 안 땁니다. 서울시를 끌어들이면 어려워지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청계천 복원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이 바뀌는 거라고 보면 쉽습니다. 청계천 상권은 사양산업이에요. 지금에 맞질 않죠. 쇠퇴기라고 봅니

51)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도 그걸 알고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럴 시점이 온 겁니다.

----- 제가 청계천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 어떤 아주머니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길 꺼리고, 그냥 기존에 하던 구멍가게 하길 원하거든요.

**김수길** (머뭇거리다가).아시겠지만……장사하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요. 만약 선생님이(면접자를 칭하는 것임) 여기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서 깨끗하게 바뀌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만약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 그냥 머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김수길** 황학동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할 순 없어요.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80퍼센트가 찬성하면 20퍼센트가 반대를 해도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 송파구 장지동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인들이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로서 제안한다고 하였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구체적 사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대안은 대안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경위가 인근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계천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상인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생각일 뿐이다.<sup>52)</sup> 이명박 서울시장은 “기존의 상권 가운데 경쟁력있는 산업은 존치하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계천은 사양산업의 집산지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생계터전이고, 삶의 공간이다. 이러한 정책시행의 일방성은 고스란히 인근주민의 생활침해로 이어진다.

(2) 김진영(여·20대)씨<sup>53)</sup>: “(노점상은) 우리 주민도 아니고, 어디서 온 뜨내기 인지도 모르잖아요.”

황학동사무소 직원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황학동사무소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해당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복원공사 자체를 별

---

52) 조선일보 2003년 7월 17일

53) 청계 6가에서 그릇 파는 노점상

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점상의 경우 해당관할이 아니라 하여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황학동 벼룩시장 쪽에 청계천 복원문제가 있는데요…….

**김진영** 실제 청계천 문제는요,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별로 실감이 나질 않네요.

(중략)

**김진영** 그리고 황학동 주민들은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하기 보다는 중앙시장에서 해요. 청계천 주변상인들 중에 황학동 주민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중앙시장 상인의 반이 황학동 주민이죠.

(중략)

**김진영** 그런데 생활조사가 잘 안됩니다. 실제로 20명이어야 하는데 11명밖에 안돼서 가정방문 같은 걸 못하죠. 종로구, 성동구, 중구가 섞여있어요. 아주 희한한 지역특색을 가지죠. (노점상은) 우리주민도 아니고, 어디서 온 뜨내기 인지도 모르잖아요.

## 5. 심층면접 결과 나타나는 특징

### 1) 일상적 삶의 파괴

정부정책에 의한 주민 삶의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임이 본문에서 드러났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작업공간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작업공간에서 이들의 일상성은 5요소의 측면에서 파괴되었다. 따라서 청계천 상인들이 감내했던 작업공간의 침해라는 것은 결국 일상성의 침해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던 소득이 감소하고, 일상적으로 머물던 공간이 침해당하고, 일상적으로 향유하던 공간에 대한 상징이 사라지며, 일상적이던 이웃관계가 변화하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교통이용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정책으로 인해 강요되는 삶의 변화 자체를 직시할 수 있었다.

### 2) 대안부재로 인한 불안감

작업공간을 5개의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갖는 불안감은 5개 요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

이같은 불안감은 정부의 일관성 없고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으로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김철주씨<sup>54)</sup>와의 인터뷰 결과, 인도 축소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새벽에 몰래 가로수를 뽑고 인도 작업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 인근상인들과의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만 관여하고 주변지역 재개발은 민간위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는 인근 상인들에게 매우 불안한 요소로 작용한다. 김대식씨<sup>55)</sup>와의 인터뷰 결과, 서울시에게 공사를 위임받은 LG건설측은 육교철거 전에는 노점상들의 상권을 계속해서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철거가 이루어지고 나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효원씨<sup>56)</sup>의 경우 현재 상가의 뒤편에 롯데건설이 주관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가가 철거될지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장지동으로 이전해갈지의 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은 정부가 명확한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단지 시장원리에 따라 주변상권의 재개발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인대책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서울시에서 대체상권지를 마련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효원씨와의 인터뷰 결과 대체상권지는 ‘대안’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선택’임이 드러났다. 또 작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또한 서울시의 경우도 상권 활성화를 상인대책으로 약속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체상권지로 제시한 송파구 장지동의 경우, 이미 송파구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계획성 없는 정부정책은 상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한 불안감은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 요새 심정이 어떠세요……?

**김철주** 답답하고 불안하죠. 언제 포크레인 들이댈지 모르니까요. 가로수를 뽑는다고요.

54) 40세 남성, 청계 7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음

55) 54세 남성, 청계 6가 육교위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2003년 9월 15일에 육교철거로 노점상이 철거됨

56) 53세 남성, 청계 8가에서 슈퍼 상가 운영

----- 장지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철주** 장지동 간다고 해도 7년 후의 이야기이고 상권형성 되고 하려면 시간 걸리는 데 그 동안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아요. 오죽하면 나와서 노점 하겠습니까?

----- 많이 불안하시고 막막하시고 그러실 꺼 같거든요.

**김대식** 불안하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서울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김대식** 지금 다른거 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서 이려고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카고 있재.

**여동남** 사람이 안와요. 만물시장이란 인식이 없는 거야. 여기가 밥줄인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다른데 가서 또 해봐. 분명히 또 쫓아와서..(장사 못하게 할 텐데.) 옛날에 애기엄마(옆에 있는 아주머니)랑 나랑 고생.....(을 많이 했어.) 애기엄마가 매도 맞고, 아주 별짓 다한 사람들이야. 저게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 건데, 지금 또 이러니까(쫓겨나게 생겼으니까).....

### 3) 복원사업의 차등적 결과

청계천 상인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삶의 변화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등적이었다. 성별, 나이에 따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차이는 점유형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작업공간 5요소 중 주로 거주(안정성), 공간상징 요소에서 두드러졌다.

거주(안정성) 요소에서 상가상인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상인대책 대상자였고, 불안하나마 대체상권지도 있었지만, 노점상의 경우는 기존에 거주를 위협하는 것이 단속의 위험 정도였다면, 이제는 노점 공간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었다.

공간상징의 경우도, 상가상인의 경우 별다른 침해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반면, 노점상인들은 ‘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고, ‘밥줄’이 끊긴다는 정서적인 공황상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노점상인들의 경우 ‘쏟아버린다’(여동남씨), ‘깎아뺏간다’(김철주씨)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물건처럼 취급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57) ‘깎아뺏간다’, ‘쏟아버린다’ 등의 개념은 노점상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로서, 감흥개념(sensitizing concep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감흥개념은 특정 집단의 성격을 생동감있게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동남** 허허허. 이쪽에 여쭙보세요. 노점상들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머할라고 이것을 해요. 편안하게 살지. 다 우리 서울 시민이여. 근데 완전히 무슨 거지취급을 해. 거지도 다 시민이고 그런 거여. 전혀 저기를 안 하고. 쓸어 버릴려 그러니까.

**김철주** 서울시는 우리를 무시해요. 말이 안통하지. 그나마 상인들은 이주비 같은 거 받아서. 내가 그거 얼마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노점상은 불법이니 그냥 나가라. 깔아 뭉개는 거 아니에요.

## VI. 결론 및 대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인식되어 주로 눈에 보이는 인권침해를 다뤘다.<sup>58)</sup> 예컨대 국가에 의한 강제철거는 이제 그 비인간성, 폭력성 때문에 누구나 명백히 인정하는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도 이슈화되어야 하며 연구되어야 한다.<sup>59)</sup> 정책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침해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양상을 연구할 때에는 보다 정교한 개념과 이론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본 인터뷰 결과 상권이 몰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장사하던 자리를 잃고, 정서적으로 공황을 경험하고, 교통 체증을 호소하는 등 청계천 상인들의 작업공간-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의 5요소에 있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강요된 삶의 변화’로 인한 ‘일상적 작업공간의 침해’라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국가정책이라는 거대프로젝트 앞에서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방어할 수 있는 수

58) 조국교수 강제연행(1993. 6. 23) 및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인권운동가 노태훈 강제연행(7. 13), 현대노조간부집도청(8. 12), 민중정치연합원주지부사건(8. 27), 김삼석, 김은주남매 강제연행(9. 8), 안기부성고문사건(10. 7), 원진노동자대회최루탄난사(10. 26) 등;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참조. <http://www.sarangbang.or.kr/>

59)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지정 혹은 해제로 인한 주민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침해적 요소는 앞으로 정부가 실시할 다른 정책에서도 별다른 차이 없이 발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같이 삶의 변화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전무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더 큰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거대정책 앞에 주민들이 자신들 삶의 공간침해를 줄이고 방지하고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하나는 개념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실천적인 것이며, 세 번째 것은 이 둘을 결합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개념적인 대안으로 ‘공간선택권’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공간침해 현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 줄 개념이다. 둘째 실천적인 대안으로 ‘경험전문가’를 통한 정책시행 초기단계에서의 주민생활조사의 상설화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이 두 대안을 결합한 형태인 ‘국가정책 시행상 원칙’을 제시하려 한다.

## 1. 공간선택권 개념

청계천 상인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정책으로 인한 삶의 공간의 침해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주거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권침해요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가옥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권 개념으로는 상권에서의 공간침해가 설명되지 않는다. 가옥은 ‘거주’라는 요소가 중심에 위치하지만 청계천 상권은 ‘거주’라는 요소 외에도 ‘노동/급여’,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도 공간침해로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주거권은 빈민층의 주거빈곤이 중심이었지만, 정책으로 인한 공간침해는 빈민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김효원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산층의 경우에도 엄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인권침해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공간선택권 개념은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존연구에서 주거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주거권 개념이 존재했다면, 본 논문은 정책에 의한 생활공간의 변화를 통해 공간선택권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 결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로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

데, 정부정책으로 인한 공간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간선택권’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공간선택권’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주거권 이론을 보다 확장시킨 것이다.<sup>60)</sup>

#### 1) 현재의 주거권 개념

주거권(Housing Right)이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확보할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누리고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책임질 것을 내용으로 한다.<sup>61)</sup>(한상진 편, 1998: 407)

현재의 주거권은 주로 주거 빈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sup>62)</sup> 하성규(2003)에 의하면 주거의 조건과 주거권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sup>63)</sup> 하나는 인간의 거처로서 ‘주택’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관계와 자아 정체성으로서의 ‘주거’이다. 먼저 ‘주택’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함을 전제로 한다. 이때 지붕, 벽면 등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면적(최소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전기·상하수도·도로 등의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정상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거’의 기능과 역할은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 주거는 이웃, 지역사회 등의 사회 환경과 연계되면서 동시에 평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개인화된 장소(home as a personalized place)이어야 한

60) David A. Snow and Danny Trom에 의하면 이론의 발전단계는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발견, 둘째는 이론의 확장, 셋째는 이론의 정교화이다. 현재 주거권을 이론의 첫째단계인 ‘이론의 발견’으로 본다면, ‘주거선택권’은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의 확장(Theoretic extens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avid A. Snow and Danny Trom(2002), “Ch. 6. The Case Study and the Social Movements”,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61) 유엔에서는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점유의 안정성, 적절한 시설, 적당한 가격 또는 임대료, 쾌적한 주거수준, 적절한 입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UN Commission on Economics(1991),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ral Comment No. 4 on Right to Adequate Housing

62)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간행물인 ‘도시와 빈곤’에 연구가 많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1995년 기본과제로 ‘주거권의 개념과 주거권운동’을 다룬바가 있다. 현재의 주거권은 하성규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주로 제시하였다.

63) 일반적으로 주거빈곤은 “개별적으로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 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대한주택공사(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달성방안』, 11쪽

다. 따라서 부당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나 비자발적인 철거의 위협 등은 주거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일로 본다.(한국도시연구소, 1996: 24,25)

현재의 주거권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제철거의 금지이다. 주로 빈민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만연하였던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근거로써 주거권이 다뤄졌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둘째, 국가의 거처제공의 의무의 강조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려면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衣·食·住)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등 문화적인 최저생활과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중 먹고(食), 입는(衣)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라 할 수 있지만 주거문제(집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빈민들의 주거문제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주거조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 권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한국인권재단, 2000: 521) 그래서 국가의 거처제공의 의무를 강조한다. 국가는 적절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항구적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기존의 불량하고 적절하지 못한 주택(혹은 거처)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한국도시연구소, 1996: 28) 그래서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주택공급정책적인 대안들이 제시된다.

셋째, 주거권의 법적 보장 요구이다. 공공주택공급, 주거비보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을 대안으로 본다.<sup>64)</sup> 그런데 올해 6월 30일 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제의 도입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sup>65)</sup> 이로써 주거빈곤을 위한

64) 불량주택 재개발론의 468쪽을 참고 할 것, 하성규·김형국(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서울: 나남 출판

65) 최저주거기준제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은 도외시 되어 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거안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2003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6월,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

주거권은 새로운 개념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sup>66)</sup>

인간이 생활공간에서 경험하는 삶의 침해라는 것은 반드시 가옥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주거권은 공간이 곧 삶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면 서도 주거공간을 집과 등치시키면서 단지 ‘집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의 심층적인 차원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간선택권’ 개념은 현재의 주거권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정책에 대항하여 자신의 삶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 공간선택권 개념

공간선택권 개념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공간의 수평적·수직적 확장이다. 이는 현재의 주거권 개념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축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1) 공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

공간선택권은 현재 가옥에 한정되어있는 주거권의 공간영역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간의 수평적 확장은 다양한 생활공간을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옥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는 작업공간, 동네 공원과 같은 여가/휴식공간, 학교와 같은 교육 공간 등 다양한 생활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청계천 인근상권은 작업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활공간의 한 측면에 속하는 것이었다.

둘째, 공간의 수직적 확장은 공간을 단선적이고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생활침해의 경우, 보통은 생업권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생활공간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공간의 심층적 맥락을 간과하여, 공간침해로 인한 삶의 전격적 변화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청계천 상인들의 경우 사실상 사람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삶에 있어서 ‘전체

---

66) 실제로 2003년 6월 30일 최저주거기준법의 통과로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주거권 신장 노력은 소강상태라 볼 수 있으며, 주거, 거주와 관련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적'이고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이런 삶의 변화가 단순히 주거권, 생업권, 등의 특정 분야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한정될 경우 자칫하면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교통, 공동생활, 공간상징 등 이면의 훨씬 다양한 삶의 자리들을 놓치게 된다. 특히 생업권만으로 작업공간의 침해를 접근할 경우 '국가가 정책시행시 생업에만 지장이 없게 한다면 국가정책시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변화는 정당인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는 정책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생업 등의 삶의 특정 영역의 단순한 침해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삶의 공간은 그렇게 간단히 여겨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들이 필요한 것이다. 즉 공간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양상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간이 경험하는 주거공간, 작업공간, 여가/휴식공간, 교육공간 등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각각 주거, 노동, 여가/휴식, 교육이라는 단일한 기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공간마다 다양한 층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간을 접근함에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계천 작업공간의 경우 노동/급여, 거주,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이라는 5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여가/휴식공간, 교육공간도 위와 같이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2) '선택' 대안을 최대한 강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여러 가지 공간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람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거나 주변 공간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확립, 구축, 재구성한다. 둘째,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공간에 '놓여'진다. 이때 공간선택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형은 첫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기 좋고 한적한 농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여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 공간선택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해요인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라 본다.

이때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개개인은 살아갈 집을 선택하듯이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생활공간을 시시각각 선택한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주거권과 차별된다. 즉 현재 주거권은 지속적으로 머무를 권리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특정 공간 및 공간환경을 선택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장소선택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생활장소는 언제든 떠날 수도 있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이점이 있다.

사람들은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겪을 경우 반드시 공간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많은 경우 ‘보상’만 제대로 된다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대체상권지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에는 정책대상자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감내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공간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선택의 폭이 특정방향으로 미리 정해져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강요된 선택’이라 부른다.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강요된 선택으로 인한 강요된 형태의 삶이었다. 청계 8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효원씨의 경우, “근데 사실 공사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지. 장사하고 싶되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당장은 가게 되면 피해가 되니까.”에서 정책의 강제성, 일방성이 드러난다. 이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정책에 적응하고 길들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대안으로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정부의 대안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강구하는 쪽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청계천 인근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부분적인 피해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격적인 피해를 입는데, 이들은 삶의 공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생활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이들은 국가정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 지워진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

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의 거주지의 선택의 과정에서 개별 행위자는 '공간선택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통보와 일방적인 집행과정으로 '선택의 권리'가 침해되게 된다. 또 실제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책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감내해야 하며, 이때 선택의 여지들이 실질적으로 없게 되므로, 사람들은 무기력 속에서 권리침해를 견뎌야 하는 것이다.

흔히 상권을 재개발 할 경우 정부가 대체상권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할 모든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체상권을 제시함으로써 특정방향으로 상인들의 삶을 강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청계천 복원사업에서도 정부는 송파구 장지동을 대체상권으로 지정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주민들을 정책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감내하는 주민들에게 특정 방향으로 대안정책을 제시하면서 적응시키려 할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수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자신의 공간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 또 실제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체상권지는 상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많다. 정부가 이번 청계천 복원사업의 대체상권지로 제시한 송파구 장지동으로의 이주는 첫째, 거의 강제이주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둘째, 송파구에서 벌써 반대여사를 표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대안이 아님이 드러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정책대상자들의 삶의 공간을 이해하고 인정하여 그들의 권리와 아픔을 이해한 후, 그들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는 식으로 정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공간선택권이 갖는 의의

우선, 공간선택권은 정책으로 인한 공간침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청계천 복원정책으로 인한 상인들의 생활공간 침해를 접근할 경우 현재의 주거권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권침해를 설명할 수 있다. 주거권은 국가가 적절한 거처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따르면 대체상권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대체상권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공간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내면의 노동/급여, 공간상징, 공동생활, 교통 등의 요소에서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삶의 침해는 ‘거처제공’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심층면접결과 상인들에게 있어서 청계천은 생계공간인 동시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였다. 따라서 상인들은 정책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격적’인 삶의 변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 이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변화, 청계천 상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훼손, 정서적 공황,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심리적 불안 등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안이나 막연함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막연하다’고 느끼며, ‘그냥 정부 정책이 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선택권 개념에서 보면 자신의 작업공간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서 오는 불안은 작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방적인 정책시행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 막막함을 감당하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주거권이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선택권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사전에 이해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즉 공간선택권은 정책으로 인한 ‘강제된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으로 인해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삶의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간선택의 가능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헤아림으로써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간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부른 정책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 제어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 2. 경험전문가(Experts in experience)의 도입을 통한 정책대상자에 대한 생활 조사의 상설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상인들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봤던 부분은 바로 노동/급여 부분이었다. 복원사업 발표 이후로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예전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청계천 상권이 장사를 계속하는 기간에 한해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홍보를 해줬다면 상권몰락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 볼 수 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의 정책집행으로 상인들의 피해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면, 정부는 시급히 정책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사를 상설화,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sup>67)</sup>

기존에 정부에서 주로 실시하던 설문지중심의 여론조사방법은 미리 짜여진 형식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기존의 방법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질적조사방법은 해당주민을 심층면접하는 것이 대표적이데, 이를 위해 ‘경험전문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경우 경험전문가는 가난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겪어내고, 그 경험들을 사회전반의 문제로 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루고 그것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개개인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경험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실제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주민들과 정책 결정자 간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다. 이 과정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sup>68)</sup>

경험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문제들을

67) 황학동 동사무소 김진영씨와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생활조사가 잘 안됩니다. 실제로 20명 이어야 하는데 11명밖에 안돼서 가정방문 같은 걸 못하죠.” 알 수 있다.

68) 실제로 벨기에에서는 이 경험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2001년 9월 14-15일 양일에 걸쳐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공식화된 의견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설문 조사 형식에서는 사실상 미리 짜여진 의견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정책대상자의 삶에 녹아있는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라고 여겨오던 것도 미리 짜여진 설문지, 질문지 앞에서는 표현하기 힘들다. 그 사회의 진짜 문제 오히려 무응답이나 기타로 표기되는 설문항목이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전문가가 해당주민을 심층면접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양적조사를 병행하는 질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인터뷰어가 필요하다. 경험전문가들은 고도의 인터뷰 기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시민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에 배어있는 사회문제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터뷰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질문지에 답하는 것 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경험전문가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둘 사이에 정보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전문가는 정책집행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이는 결국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권보장으로 이어진다.

### 3. 국가정책 시행상 원칙의 확립

만약 정책대상자가 국가정책시행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감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원칙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정책시행 전〉

- 국가는 주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책정보를 제공한다.<sup>69)</sup>
- 정책시행 전에 국가는 정책대상자의 생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예측한다.
-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이때 수집된 주민의견은 국가사안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국가는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선택 대안을 강구한다.
- 확정된 적응양식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정책시행 중〉

- 정책시행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생활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정부정책에 피드백으로서 정책시행에 반영한다.
- 만약 시행과정 중 공간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국가는 정책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 〈정책시행 후〉

- 정책시행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정책시행 때 참고한다.

---

69) 청계천 상인들이 스스로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만큼 정확하고 풍부한 정부방침이 홍보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계천 상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2.10.24부터 12.2까지 실시)에서 산업용재 공구상가의 경우 70%, 전자·전기·조명상가의 경우 69%, 의류 및 부자재 상가의 경우 47.5%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홍보책자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정책홍보가 잘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참조

## VII.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후에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어 노점상이 다 철거되고 상가가 다 바뀌고 나서 다시 생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청계천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5가지 요소 이외에 변화의 요소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되는 요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상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실제 청계천 벼룩시장의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지고 상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더욱더 두드러지는 삶의 변화요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청계천 공구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들이 대체상권지인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하게 된 이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청계천에서보다 장지동으로 이전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삶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청계천 상인들은 많은 경우 주거지가 청계천 근처이므로 송파구까지 출퇴근하기에 교통이 많이 불편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상권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손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업종을 변경할 경우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 정부의 강제에 의한 것인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방법론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 없이 질적방법만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질적연구는 많은 경우 양적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질적연구는 보조적인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sup>70)</sup> 따라서 본 질적연구인 본 논문에 더하여 청계천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양적연구가 앞으로 추가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70) David A. Snow and Danny Trom은 'triangu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동등하게 병행되어야 하며, 양적, 질적연구와 이 둘을 새롭게 종합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triangulation'이다. triangulation은 사회적 실재가 복잡하고 모든 조사 방법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기 보다는 각기 취약한 측면을 보충하는 취지로 제시되었다. David A. Snow and Danny Trom(2002), "Ch. 6. The Case Study and the Social Movements",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셋째, 본 논문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삶의 침해를 다루었지만, 앞으로 시간을 중심으로 한 삶의 침해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으로 인한 인생의 계획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대 편입생들에게 완전 임용을 보장하면서 편입을 유도했다가 교원임용정책이 바뀌면서 이들의 완전임용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이같이 취업을 다루는 임용정책 등은 한 개인의 인생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생애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개인의 삶의 계획이 뜻하지 않게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 부 록

### [부록 1] 심층면접 대상자

이름	직업	성별	연령	현 상황	녹음기 사용 여부
여동남	노점상(청계 8 가)	여	65	노점상 철거 전	사용
김철주	노점상(청계 7 가)	남	40	노점상 철거 전	사용안함
김대식	노점상(청계 6 가 육교 위)	남	54	노점상 철거 후 현재 임시 노점상	사용
김효원	소매상가(청계 8 가)	남	53	상가 철거 전	사용안함
김진영	황학동사무소 직원	여	20대		사용안함
김수길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남			사용안함

### [부록 2] 주택법중개정법률안<sup>71)</sup>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71) 건설교통부, 2003년 6월 5일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이하 “지역최저주거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2003년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심층면접 1

1. 피면접자: 황학동 동사무소 김진영씨(20대)

2. 면접일시: 2003년 9월 23일 오후 5시 ~ 6시

3. 면접장소: 황학동사무소

4. 면접내용:

- 황학동 벼룩시장 쪽에 청계천 복원문제가 있는데요…….

김진영: 실제 청계천 문제는요,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별로 실감이 나질 않네요.

-전입, 전출 정도는?

김진영: 워낙 8년 전부터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전출입에 크게 변화 없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8년 걸렸죠. 지연되고 있는 거라서 나갈 사람은 다 나갔어요.

-생계민원은 늘어나고 있나요?

김진영: 아니요. 오히려 줄어들지요. 사람들이 나가니까요. 임대아파트 얻어서 다 나갔어요. 남산에 있는 아파트 말이예요. 재개발해서 다 나갔는데요.

김진영: 근데 원래 93년 며칠이더라? 암튼 (연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걸로 봐서 황학동과 별로 와 닿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 이후입주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요. 2000년 2001년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다 재개발 알고 입주한 것이지요. 재개발로 요구 당할 때에는 비워주기로 계약서에 써있어요. 집 비우겠다는 계약서 말이예요. 다 알고 입주한건데. 얼토당토않게 투쟁을 하는 거죠. 임대 아파트의 경우 천만 원 정도로 봐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2백, 3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토당토않게 주장을 해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아무튼 해당자는 임대아파트로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투쟁하는 사람들은 흥분을 잘하고 욕을 잘 해요.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죠. 재개발 조합에 전화해보세요. 애네가 보상금 주는 거니깐요. 이들이 관할하는 것이지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통장님에게 전화해보세요. 통장님은 남산에 임대아파트 얻어서 샀어요. 상가에 있는 주민의 경우 3층 이상만 철거대상이죠. 상가는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학동이 낙후지대로 지정된 게

3년이 넘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지 4년 되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낙후지역으로 재개발대상지였거든요. 생각해봐요. 많이 낡았잖아요. 화재가 나면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삼일아파트 뒤에 그거 건물만 그쪽에 있지 지분은 서울시였거든요. 그리고 황학동 주민들은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하기 보다는 중앙시장에서 해요. 청계천 주변상인들 중에 황학동 주민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중앙시장의 반이 황학동 주민이죠.

-생활조사해보면 청계천 상인의 계층은 중층 정도인데요. 다 같지는 않잖아요?

김진영: 네, 그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음반업하는 분이 있는데, 가게가 여기뿐 아니라 종로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부유한 층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생활조사가 잘 안됩니다. 실제로 20명이어야 하는데 11명밖에 안돼서 가정방문 같은 걸 못하죠. 종로구, 성동구, 중구가 섞여있어요. 아주 희한한 지역특색을 가지죠. (노점상은) 우리주민도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되며 판단기준은요?

김진영: 1인 36만원, 2인 59만원, 3인 81만원, 4인 102만원 최저생계비로만 거의 판단합니다. 3296세대 중 즉 8042명 중에서 약 130 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입니다. 대부분 황학동주민은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므로 청계천 복원에 별 변화 없고…….

-세금 내는 노점상은요?

김진영: 잘 모르겠어요..아무튼 노점상 불법 아닌가요?

#### [부록 4] 심층면접 2

1. 피면접자: 노점상하는 여동남씨(여·65)

2. 면접일시: 2003년 9월 23일 오후 1시~2시

3. 면접장소: 삼일아파트 24동 앞

#### 4. 면접내용:

- 여기 삼일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여동남: 여기 안 살아요. (실제로 여동남씨는 청계천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투쟁하는 이유는 복원공사가 있기 때문에…….(청계천 복원공사 하면 여기서 이렇게 1미터가 들어와 버려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자리가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려는 절반이 뺏겨버리려는 노점을 할 수가 없잖아.

- 서울시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한걸로 아는데요…….

여동남: 아니야. 그거 속임수고, 전부 피해 없게 한다고 하죠? 다 (선을) 거뒀어요.

- 서울시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데요..

여동남: 어기고 있는 거지요. 어기니까 이 짓을 하지 어기지 않으려 왜 이 짓을 해요.

- 육교위에 노점상이 9월 15일날 자진철거 형식으로 철거를 했잖아요.

여동남: 아니죠. 절대. 아니, 거기서 30년, 40년 허던 사람이 거기서 아들딸 키우고 먹고, 다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진 철거를 해. 강제철거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여. 그거는. 이명박이가 공약 내세울 때 자기가 청계천 복원공사 하겠다고 해놓고, 시민들은 아랑곳없고, 자기의 저거만 내세우는 거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우린 다 죽으라는 거잖아.

- 노점상에선 어떤 물건을 파시나요?

여동남: 각자가 다 틀리니까. 나는 생활용품 팔아요. 천 원짜리

- 이게 지금 철거가 7월 1일날 시작 됐는데요,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지셨나요? 장사라든지..

여동남: 전혀..지금 생계가 막막하지. 전혀 (생계가) 되지가 않고, 서울시민들은 우리뿐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천 원짜리 팔아갖고 2백 원 3백 원 남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물이 내려가면 무슨 물이 내려가겠어. 여기가……. 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라고 공약내세우고,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기 식이지. 국민 다 죽이는 거여.

- 어디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건지요?

여동남: 나는 구기동서와요. 우리 아저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 교통은 옛날하고 어때요?

여동남: 말~도 못하게 맥혀. 진짜 여기 한번 올라든, 진짜..

- 버스 몇 번 타고 오세요?

여동남: 10번 타고 오는데, 노선이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 빠져나올라든 진~짜 막 욱이 저절로 나와.

- 옛날에는 몇 분정도 걸렸는데..지금은..

여동남: 옛날에는 안 맥히든 40분이든 와요, (지금은) 여기 한번 들어올라고 하며는 1시간 반. 청량리에서 내려갖고, 지하철타고 올 때가 있어요. 막히니까. 1호선 타고.

- 상당히 걸어오셔야 되잖아요.

여동남: 그게 빨르니까. 너무 막히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사들도 욱을 저절로 해. 지금은 2차선 밖에 안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때가 있어. 그럼 차안에서 열리는 거여. 없는 서민만 다 죽이는 거지 뭐.

- 말씀 들어보면 청계천 복원으로 생활의 변화가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동남: 생활의 변화는 변화가 온 거고. 허허벌판 마냥 하니까. 그거지. 없는 사람들은……. 막막한거여.

- 제가 here를 자주 오고요. 6월에 복원하기 전에 왔었거든요. 사람 참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동남: 시민들 인식이, 청계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장사꾼이 없다. 명물시장이잖아요. 여기가. 명물시장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오죽하든 “거기 헐려서 어떻하냐..” 하면 “우리 (거기서 장사들) 해” 그러든, “거기가 뭐가 있어서 하냐, 어떻게 하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거기가 없어진 걸로 인정을 해. 그

- 러니까 사람이 없지.
- 육교에서 노점 하셨던 분들은 지금……?
  - 여동남: 있어요. 있는데, 너무 싸움하다가 지쳐가지고. 말이 그렇지 이게 할일이 아니잖아. 이게. 허구헌날 이게 싸움하고, 사람이 지쳐가지고.
  - (잠시 침묵)
  - 여동남: 와서 좀 대화도 하고. 뭔가 할 만도 하잖아요?
  - 서울시에서는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거든요.
  - 여동남: 허허허. 이쪽에 여쭙보세요. 노점상들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며말라고 이것을 해요. 편안하게 살지. 다 우리 서울 시민이여. 근데 완전히 무슨 거지취급을 해. 거지도 다 시민이고 그런거여. 전혀 저기를 안하고. 쓸어버릴려 그러니까.
  - 옆에 할머니 보쌈집인가 가게 이사했죠?
  - 여동남: (지금 앉은 위치를 가리키면서) 여겼었잖아. 돈벌었으니까. 보쌈집이 옛날부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런 사람은 노점이 아니니까. 영업하는 사람이야. 보상받아가지고 나가니까. (보상) 안 받아갖고 나가요? 다 받아갖고 나가는데.
  - 공사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 여동남: 아직은..
  - 앞으로 여기 계속 있으시다 보면요..
  - 여동남: 그렇지, 보통 지장있는 게 아니지. 아파트 철거니 해서 장사꾼들 앓는다. 인식이 돼 버렸어. 택시 기사분들은 더 잘알아. 토요일 만물상 있잖아? “만물시장이 없어지는구나.”하지.
  - 동묘역에서 역에서부터 장사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 여동남: 지금 상황이 그래요.
  -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장사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여동남: 차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길로 땡기면서 하지..
  - 장사를 아예 그만두는 분도 있나요?
  - 여동남: 몰르죠. 장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파악이 안되니

간....여기가 생계이면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 서울시에서는 영업이 불편한걸 줄여준다면서 대책들이..

여동남: 말만 그렇지. 전혀.

- 말씀 들어보면 대책이 별로 없는 듯 한데요..

여동남: 별루가 아니여. 전혀 없어. 그건 상인들 얘기하는 거지 노점상은 제외지.

여동남: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 (노점상은) 대책 자체가 아예 없어.

- 여기서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동남: 한 10년 됐지.

여동남: 이쪽도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애기가 심장병 애기가 (있는데), 애기 때문에 고생 무지무지 했지. 아직도 수술을...(못해서), 나이도 지금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인데, 애기가 자라질 못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 애가 갓난때서부터 그냥..등어리에다 업고 저렇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사람들이 ..

여동남: 사람이 안와요. 만물시장이란 인식이 없는 거야. 여기가 밥줄인데, 어디 갈데가 없잖아. 다른데 가서 또 해봐. 분명히 또 쫓아와서..옛날에 애기엄마(옆에 있는 아주머니)랑 나랑 고생. 애기엄마가 매도 맞고, 아주 별짓 다한 사람들이야. 저게..하는 건데, 지금 또 이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없는 시민에게는.....전혀...이 (장소) 마저 뺏을라고, 저 넓은데, 뭐 하러 들어와. 그래놓고 시민한테는 2차선 내네, 3차선 내네. 20년 전에 서로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 삶의 터전이고 어느 귀퉁이라도 허게끔 하게 해주고, 그래야 그게 당연한거 아니여. 세금 다 받아먹고, 빨갱이가 아니고, 바리케이트 친다, 뭐 친다, 그러질 않나. 너무 우리나라가 가 보머는 정치인들 다 도둑놈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건 잡으라 그러면 못 잡고, 없는 시민들만...

## [부록 5] 심층면접 3

1. 피면접자: 소매상 하는 김효원씨(남·53)

2. 면접일시: 2003년 9월 30일 오전 11시~12시 10분

3. 면접장소: 삼일아파트 1층 상가

### 4. 면접내용:

- 청계천에서 얼마나 머무셨나요?

김효원: 30년 됐지. 내가 이 동네 아주 잘 알지. 사우디 갔다가 서울서민으로 벌  
어먹으려고 여기 왔어. 당시에 800만원에 삼일아파트 사서 들어왔어. 600이 전  
세였을 때야. 내가 지금은 상가에서 장사하지만 그땐 노점 했어. 과일장사. 그래  
서 그거하면서 결혼하고, 큰애 작은애 낳았어. 고향은 전남 남원이야. 여기가 제  
2의 고향이 된 거지. 여기서 애들 대학 둘 다 보내고, 고향 이상이야.

- 이곳 청계천에서 가게를 하게 되신 이유는요?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청계천에 대한 애정 및 청계천 동네에 대한 강한 신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인 듯 했다.)노동하면 노동의 대가가 나오는 곳이거든.  
옛날에도 노비, 서민들이 살았었잖아.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다고, 강남 같은  
동네는 향락이잖아. 여긴 아니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유동인구도 많고, (난 여기가) 근대화 기술  
발전의 원조라고 봐. 난. 손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 근로의 보  
람이 있고, 노점을 해도 말야.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 애들 다 크고, 솔직히  
난 대학교까지 갈 꺼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애들 대학도 시키고 둘 다 서울  
에 있는 대학 갔거든.

- 어느 대학이요?

김효원: 경희대 법대랑, 광운대 영문과. 내가 열심히 사니까 애들도 날 보고선  
배워서 애들도 열심히 해.

- 보통 가게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으세요?

김효원: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열어서 밤 11시나 12시에 닫어. 가게한지는 20년  
됐지. 당시 88년도에 처음으로 가게에 입주했어. 응. 88올림픽 할 때 말야.

- 여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편인가요?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3,4분 간격으로 손님들이 계속 다녀갔다. 분주해보였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효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봐야지. 막내는 재개발하면 조합에서 제기하는 가격보다도. 그냥 여기 있자고 해.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오자고 해. 연어가 회귀성이 있잖아. 여기 청계천에 물이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하면 좋잖아.

- 아드님은 앞으로 뭘 하실 생각인가요?

김효원: 큰아들은 대학원 간다고 하고, 작은 아들은 법대니까 아무래도 고시공부를 하겠지. 솔직히 고시 패스하는 건 꿈도 안 꾸.

- 남산아파트 가게 된 경위는요?

김효원: 삼일아파트 재개발할 때 시공사랑 서울시랑 조합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주차원에서 임대주택 준거야. 지원자는 지원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지원해서 간거야. 3100만원에 전세로 갔어. 3100만원 보증금 내고 들어간 셈이지. 공기 좋고, 산(남산)이 옆에 있어서 좋아. 단 하나 그 동네가 단 하나 교통이 안 좋아.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나야 똥똥하니까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긴 해.

- 집에서 가게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김효원: 15분 걸려.

- 언제 이사하셨어요?

김효원: 작년 5월에 이사갔지.

- 이사계획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김효원: 작년 초부터 이사계획을 했었어. 주변에 알아보니까 다 8000 이상이더라고. 그건 여력이 안돼서 못하지.

- 이사하니까 좋으세요?

김효원: 우선 애들이 맨날 낡은 테서만 살아서 새집에 살게 하니까 좋지. 조용하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여기는 시끄럽거든.

- 사모님이랑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김효원: 부부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 안 그래.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 달라. 나는 여기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해. 여기서 번 돈으로 살아왔는데,

말하자면 이 집이 뿌리인 셈이거든. 성장도 여기서 했고, 공사 완공되면 나머지 차액만 더 내고 들어오면 되거든. 근데 집사람은 가격 오르면 그냥 집을 팔자고 해. 아들 녀석 같은 경우는 아파트 팔지 말고 보존하자고 하거든. 정이 들었나봐.

- 앞으로 이곳이 재개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효원: 롯데에서 창고형 마트 식으로 쇼핑센터를 만든다고 해. 두산타워 같이 규모가 큰거 말이야. 근데 여기 청계천이 한국 벵룩시장이잖아. 골동품도 많고, 난 골동품 좋아하거든.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골동품이 좋더라고. 그래서 저기 골동품도 몇 개 수집해 봤어.(선반위를 가리킨다. 모자와 LP판도 보인다.)내가 수집하는 걸 좋아해. 지역 특색 맞게 골동품 가게를 했으면 해. 그런데 집사람은 송충이는 술있을 먹고 살자 주의야.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던 거 슈퍼 계속 하자고 하거든.

- 재개발 지정되기 전부터 사셨으니까요. 재개발결정났을때 어떠셨어요?

김효원: 내가 조합 결성전부터 여기 살아서 조합결성되는거, 조합원 총회도 계속 참여하고 그랬지. 재개발 되서 좋은 점은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점은 철거 때문에 영업이 안되는 거지. 노점이 안되면 여기 장사도 잘 안 되거든.

- 주변 상인분들이랑 친하세요?

김효원: 그럼, 친하지.

- 여기 30년동안 머무시면서 시련이랄만한 걸 맞으신 적은 없으세요?

김효원: 별로 시련이랄 만할게 없었어. 지금이 시련이지. 1년전부터...아니 정확히 말하면 2000년부터 시련이야.

- 30년 동안 사시면서 다른 곳으로 집이나 가게 장소를 옮겨보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김효원: 친구들이 좋은데 있다고 소개해주는데, 가서 보면 여기만 못해. 그리고 애들이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쉽지도 않고.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계천 복원에 희망이 많아. 일본의 경우를 봐도 하천이 있어서 연어도 살고 좋잖아.

- 상가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김효원: 송파구 장지동이랑 잘하면 문정동 까지 해서 이주한다고 해. 여기 가게

가 (노점을 제외한 수) 사만 육천개에서 사만 칠천개 정도 되는데, 이들은 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람들이야. 이 가게있는 사람들의 가게를 옮기는 거야. 세입자들. 근데 상가소유주들은 조합에서 알아서 평수만큼 처리해줘, 지금 이런 사안들을 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중이야. 물론 나도 위원회의 일원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수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그리로 보내준다는 거야. 단체로 가면 시장형성 빨라지니까. 뿔뿔이 가면 잘 안될 것이 말이지. 근데 사실 공사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거지. 장사하고 싶으되 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거지. 당장은 가게되면 피해가 되니까. 그리가지 상인은 가게를 무상으로 달라. 뭐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청계천이 상인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인데 말이야. 권리금 다 포기하고. 하는거라구.

- 딱지는 나왔나요?

김효원: 딱지 아직 없어. 관리. 근데 소유권을 시공사에 넘기는 건데. 관리감정 평가가 지금 3500 이거든. 관리처분. 이주비 5000만원을 받고 이주를 하는거야. 4000만원은 무이자고 1000만원은 이자 내면서 근데 이거 다시 이주 들어오면 반납해야해. 모르는 사람은 공짜인 줄 아는데 사실 공짜 아니야.

- 공사가 완료되면 사모님은 슈퍼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효원: 근데 집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없지. 롯데가 엄청 커다란 유통인데, 가격경쟁이 되겠어? 우리가 100원에 팔면 거기선 70원에 파는데. 없어지고 주상복합이 생기는거야. 적응해서 살아야지. 암울하고, 불안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대목에서 이분들의 생활이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시 침묵) 나는 내 생활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말해 줄 수 있어.

- 삼일아파트에서 주변이웃과 생활은 어떠셨어요?

김효원: 삼일아파트가 복도가 중앙에 와있어. 그래서 아파트지역인데도 주택보다 이웃끼리 가깝지. 몇동에 누가 산다. 그런거 다 알거던. 복도중앙이니까 시골 같애.

- 남산아파트랑 분위기가 다른가요?

김효원: 뭐 장사하고 들어가면 밤 12시 반 한시인데, 접촉이 없지. 볼 시간도 없고, 아침.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가게에 있을때 그래도 사람들 얼굴 많이 봤는

데, 하숙집이나 마찬가지로. 허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 생활 속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효원: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복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강 살리는 건 좋고, 복원 잘됐으면 좋겠고, 새건물 입주했으면 하지. 서울시는 주변 매스컴에 선전 잘 해서 좀 해주고, 벼룩시장 상권이 살면 좋지. 내가 골동품 좋아해서 진품 명품도 안 빼놓고 꼭 봐. 취미거든.

#### [부록 6] 심층면접 4

1. 피면접자: 노점상하는 김철주씨(남·40)

2. 면접일시: 2003년 10월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 면접장소: 청계천 7가 인도축소 반대 천막 안

4. 면접내용:

김철주: 우리가 여기서 투쟁하는 이유는, 청계천 복원이 인도를 축소한다고 해서 천막을 치고 있어요. 갑자기 밤에 1-2시에 가로수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청계천에 우리같은 천막이 7개 있어요. 밤에 포크레인으로 가로수를 뽑는거지, 한총련도 있어요. 24동 앞에 있어요. 동대문 육교밑에도 천막 있어요.

김철주: 여기가 세계적인 명물거리잖아. 한마디로 여기 상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나면, 이명박의 야심 때문에 상인을 줄속공사다 이거죠. 협상없이 일방통행이지.

- 교통은 어때요?

김철주: 교통은...여기 택시 한번 타봐요.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 없다고 하죠? 택시한번 타봐요. 여기 청계천 7가에서 8가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 장사는 어떠세요?

김철주: 하루에 만원, 이만 원 벌기도 요샌 어려워요.

- 택은 어디세요?

김철주: 월계동 살아요. 30분 걸려요.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교통불편은 없고,

- 노점에선 어떤 물건을 파세요?

김철주: 나는 히트상품 팔아요. 엘지 홈쇼핑 같은데서 나온 거 도매가서 떼다가 팔아요. 근데 그게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요새 정말 불경기 인가봐. 사람들 지갑 열기가 무서워요.

- 여기 계신지 얼마나 됐나요?

김철주: 나 여기 6년 있었어요. 매일 10시부터 11시는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장사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장사 안 되니까 매일 11시에 장사 시작합니다. 이틀에 한번 밤금무 하고요. 육교사람들도 그렇고, 좀 사정이 나은 지부는 3일에 한번 밤 근무합니다.

- 지금 심정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철주: 답답하고 불안하죠. 언제 포크레인 들이댈지 모르니까 가로수를 뽑아요

- 장지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잇던데요.

김철주: 장지동 간다고 해도 7년 후의 이야기이고 상권형성 되고 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그동안 어디 가서 뭐해먹고 살아야. 오죽하면 나와서 노점 하겠습니까? 서울시는 대화가 안돼요. 여기 사람들은, 대통령선거가 2007년입니까? 이명박이가 대통령 할려 그런다고 생각해요.

- 이 동네에 대한 느낌이 있다면요...?

김철주: 처음 왔을 때 장사가 잘됐어요. 외국인, 흑인, 아프리카 저기 저 호텔에 외국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조선족도 있고, 일요일이면 외국인이 전체의 30,40프로예요. 서울시민들도 구경나오고요. 인천에서도 와요. 못 보는 물건들 보러. 근데 요새는 썰렁해요. 밤새고 신경 날카로우니까 싸움도 많이 나고, 저번에는 낮 12시에 포크레인 들이대서 저지했어요. 공사 않겠다고, 해놓고선 회원들이 가서 막고,

김철주: 토요일 일요일은 풍물거리잖아요. 나 어렸을 때 물건도 있고, 단골도 있어요. 물건도 있고, 필리핀 이런 외국인들이 선물 사러 오고. 일요일마다 나도 재밌다고 보는데,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고,

- 주변 분들이랑은 어떠신지요?

김철주: 옆 사람 화장실 가면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나 몰라라 안해요. 가족 같으니까. 도화주고, 누가 물건 집어가면 해결도 하고, 노점은 하나가 무너

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상가도 처음에는 우리 투쟁하는데 같이 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 노점이 안 되면 상가도 안 되는 걸 안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주로 노점 보러 오는 거니까요.

김철주: 노점에서 돈을 벌면 새끼 부모님..어디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자리를 고수하는..

김철주: 인도축소-3미터 들어온대요. 그럼 여기서 들어오면 상가랑 만나게 되잖아. 서울시가 우리랑 상가를 이간질 시키는 거라니까. 요전에도 신발상가랑 육교노점이랑 한판 싸움 났어요.

김철주: 물 흐르면 좋은 거 모릅니까?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있는 노점상 왜 들먹 거리나고요. 북개 환영하는데, 인도축소는 안된다. 언론은 노점상보고 MBC는 가끔 보도하는데, KBS는 전혀 안 해요. 노점보다도 서울시 이야기를 해요. 서울시는 언론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명박 띄우더군요.

김철주: (옆자리에 있었던 아저씨를 지칭하며) 아까 우리 옆에 있던 사람도 애가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열려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 완전 돈 덩어리잖아요.

김철주: 옛그제는 밤에 여기서 천막 지키는데, 비가오고, 춥고 바람도 불고……. 여기 밤에 차가 엄청 빨리 달려요. 천막이 다 휩쓸려 갈 것처럼. …….(잠시 침묵)……. 옛그제 우리아들 생일이었어요. 근데 못 들어 갔어. 내가 마음이..(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인생 참 처량하더라고..(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말을 잇지 못한다.)...(침묵)……. 요새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예전엔 저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거든. 근데 요새는 이해가 가. 나 같아도 그럴 맘 생기겠더라고…….

김철주: 여기 예전에는 그래도 장사하면 근근이 먹고 살 정도는 되었거든. 근데 나 이 장사하면서 빚도 좀 있어요. 내가 백수였는데,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있었지. 나도 백수였거든.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노인 몇 명밖에 없잖아.

김철주: 백수들도 있었다고 일년 365일 나오는 백수를 내가 아는데, 하루라도 안나오면 ‘오늘 왜 안나오나....’ 한다니까. (침묵) 애는 커가지, 장사는 안 되지,

갈 데는 없지..

- 네에..

김철주: 옛날에 즐거운 건 다들 어디 갔는지, 정겨웠던 거 어디 갔는지. 다들 상인들이 신경이 곤두서있어. 어디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오면 우리 치러온 줄 알고 움찔하고, 전경차만 와도 공권력 투입하려는 건줄 알고.

- 네에..

김철주: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잡아가면 잡혀가야 하고, 장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배운 건 없지만 행복추구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생존권도 있고.

- 사진 찍어도 되나요?

김철주: 우리 동료나 부모님이 내가 노점상 하는 거 몰라요. 그래도 나는 공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으면..한마디로 쪽팔려서.....

(잠시 침묵)

김철주: 서울시는 우리를 무시해요. 말이 안통하지. 그나마 상인들은 이주비 같은 거 받아서. 내가 그거 얼마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노점상은 불법이니 그냥 나가라. 깔아뭉개는거 아니에요.

(이어서)

김철주: 그래도 철거민은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금토일 장사하니까 공사하는거 만류하나본데, 저쪽 종로구는 저항이 없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땅 판다고.

(이어서)

김철주: 집행부랑 전노련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장사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계속 투쟁을 하니.....

## [부록 7] 심층면접 5

1. 피면접자: 노점상하는 김대식씨(남·54)
2. 면접일시: 2003년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4시
3. 면접장소: 청계천 6가 인도축소 반대 천막 안

#### 4. 면접내용:

- 여기 청계천에서 처음 장사하기 시작하신 게 언제세요?

김대식: 오래됐지요. 한 82,3년쯤 됐을 꺼야.

- 20년이 넘으신 거네요

김대식: 나는 여기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고, 나는 다른거 하다가 IMF 때 망해가지고 여기 온 거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고.

- 저번 달까지 육교위에서 장사하실 때 어떤 물건을 파셨나요?

김대식: 일제그릇

- 아침에 몇 시쯤 오세요?

김대식: 평상시예요?

- 네.

김대식: 그때 한 9시에

- 택은 어디세요?

김대식: 저 위에 산꼭대기

- 가까우세요?

김대식: 네.

- 걸어서…….?

김대식: 차타고

- 저녁때 한 몇 시쯤 까지…?

김대식: 해지면 들어가지. 일몰시간에, 껌껌하면 못허니까.

- 요새는 장사가 어떠세요?

김대식: 전에 하던 거 여기서 해도. 전에 팔던 사람 한사람 파는 것 보다 못 팔아. 전체 파는 게.

- 육교 계시던 분들이 다 여기 계신가요?

김대식: 다 여기 있어요

- 청계천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 동네는 삭막하다.’ 아니면 ‘정이 넘친다’ 내지는 청계천에서 장사를…….

김대식: (한참을 생각한 끝에) 우리는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허허. 너털웃음)

- 가족 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대식: 우리 가족이요? 우리 애들 하나는 직장에 댕기고, 하나는 아직 학생이고.
- 자체분이 두 분 계세요?  
김대식: 네.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댕기고,
- 청계천 복원 때문에 청계천 철거를 했는데, 자진철거…….  
김대식: 우리는 근데, LG 회사에서 LG회사 측에서…….내려가든 서울시에서 상담을 했거던, 무조건 내려오며는 양쪽 사이드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서울시에서는 단속은 안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묵인 해준다고 했단 말이야. 일단 철거하고 내려오니까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LG회사 측에서 이놈을 못 들어내는거야. 그놈을 들어내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도 작업하기 위해서 저놈을 안 들어내는 거야. 인도 작업 할 때 어차피 노점을 다 들어낸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작업을 안하고 저놈을 안 들어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인도 작업 할때 (완전히) 들어낼려고.
- 그러면..평소 때는..  
김대식: 우리가 속은 거지, 고놈들한테 완전히
- 그렇죠..왜냐하면 아무지장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김대식: 일단 육교에서 내려오며는 그리로 들어가기로 해놓고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지금...속았다니까. 완전히..고놈들한테
- 평소 댕 단속이 있었나요?  
김대식: 그렇죠.
- 단속이 어떤 식으로 단속이..  
김대식: 우리 물건 뺏어가고 그러죠. 물건을..
- 얼마마다..?  
김대식: 요즘엔 덜한데, 옛날에는 심했지. 옛날에는 다 뺏어갔지. 벌금 물어야 가져오고.
- 연합회 가입이 되었으니까. 인도 작업을 못해야만 우리가 여기 들어가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는 거야. 인도작업을 하면 우리가 드갈자리가 없잖아.
- 저쪽에서는 시작한거 같더라구요.  
김대식: 응. 그래서 계속 막고 있는 중이야.

- 교통은 어때요? 옛날하고.  
김대식: 엄청나게 막히죠. 여기뿐이 아니야. 주변 도로를 막히게 해논거야. 양쪽 사이드 도로. 청계천은 옛날보다 약간 더 막힌다고 해도. 주변 도로. 외각도로 같은데 그런 데를 막히게 해 논거야.
- 집에서 출퇴근 걸어서 다니세요?  
김대식: 차타고 다니죠
- 얼마정도 시간이 더 걸리세요?  
김대식: 그때보다 어쩔 땐 30분 더 걸릴 때도 있고.
- 우리 집에 낙산 꼭대기거든. 걸어서 내려오면 한 10분이면 와요. 한 2,30십분 넘어서 걸리니까.  
- 오늘은...?  
김대식: 차타고 왔지요.
- 차가 막혀도 그냥..  
김대식: 그냥 타고 왔죠.
- 여기 옆에 계신 아주머니들은 같이 장사하는 분들이지요?  
김대식: 네.
- 다들 비슷한 물건 파시면서 노점 하는 분들이지요?  
김대식: 그렇죠. 전부. 뭐 물건은 다른 물건이죠 뭐. 전부.
- 다들 친하신가봐요.  
김대식: 허허. 몇 십 년같이 장사했는데. 친하죠. 친하기야.
- 많이 불안하시고 막막하시고 그러실 꺼 같거든요.  
김대식: 불안하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서울시는 대책이 없는 것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게..?  
김대식: 지금 다른거 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는 이려고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카고 있재.
-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옛날부터 이걸 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골동품 가게를 하고 싶었다. 라든지.  
김대식: 꿈은 있어도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자본이 되어 되고 하나까.
- 여쭙봐도 되나요? 어떤 꿈이..

- 김대식: 다른 음식점이나 다른 거 하고 싶었죠.
- 한식 같은 거
- 김대식: 그릇이 있으니까.(웃음)
- 김대식: 자본(녹음한다는 상황을 인식하여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 듯 하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이 안 되니까
- 여기 청계천근처에서요?
- 김대식: 아. 요 주변에서하지. 아는데서 해야지 모르는데서 못하지
- 처음에 청계천에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대식: 집사람이 여기서 하고 있어.(웃음)
- 여기서 같이 한분이 하시다가 교대로 하시는 거죠.
  - 지난달에 철거당시에 자진철거 형식으로 서류를 썼다고 하는데요.
- 김대식: 서류는 안 썼어.
- 그럼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나요?
- 김대식: 자체 회원명부가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 가입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 [부록 8] 심층면접 6

1. 피면접자: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김수길씨<sup>72)</sup>

2. 면접일시: 2003년 10월 31일 오후 3시반~4시

3. 면접장소: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4. 면접내용:

- 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생활조사가 있나요?

김수길: 작년에 복원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인들 설문조사 안합니다. 민감하니까요. 상인들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 상인들 대책에 대해서요.....

김수길: 저도 벼룩시장을 좋아해서 종종 갑니다. 그곳의 저도 벼룩시장을 없애지 말고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는 영업에 지장 없게 하려고 함

---

72)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님

니다. 상인들은 피해 입는 건 아니니까요. 노점상은 피해가 크지요.

- 노점상 대책은요?

김수갈: 노점상은 대책이 없는 게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대책은 없습니다. 노점상은 양성화하거나 없애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요새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형 노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응답자가 자료를 가지러 가느라 5분간 자리를 비움)

김수갈: 청계천을 복원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남 북간의 지역균형개발 외에도 서울시의 뜻은 공식적인 것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맥락이 있는데요. 청계천이 서울의 중심 아닙니까. 서울의 중심을 복원함으로써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예전이랑 주변환경을 같게 할 순 없지요. 깨끗하게 복원하면 주변 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청계천만 복원하고 주변 환경을 바뀌지 않는다면 개발 안 하는게 낫지요. 청계천 복원사업이 상인들의 개발과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라고 해서 이동시킬 것으로 아는데요.....

김수갈: 장지동을 대체상권지라고 말하지만,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대체지로서 유도하는 것이지요. 용산 전자상가처럼 대체상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가 안 건드려요.

- 그러면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수갈: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손을 안 땁니다. 서울시를 끌어들이면 어려워지는 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청계천 복원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이 바뀌는 거라고 보면 쉽습니다. 청계천 상권은 사양산업이에요. 지금에 맞질 않죠. 쇠퇴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도 그걸 알고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럴 시점이 온 겁니다.

- 제가 청계천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아주머니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길 꺼리고, 그냥 기존에 하던 구멍가게 하길 원하거든요.

김수갈: (머뭇거리다가) ..아시겠지만....장사하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더 낫다

고 생각하면 움직이지요. 만약 선생님이(면접자를 칭하는 것임) 여기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서 깨끗하게 바뀌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만약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 그냥 머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하면.....

김수길: 황학동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할순 없어요.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80퍼센트가 찬성하면 20퍼센트가 반대를 해도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 청계천 상인들 말로는 청계 8가 뒤편으로 롯데 백화점이 생기고, 주상복합 쇼핑몰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김수길: 주변상권 개발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만 할 뿐입니다. 주변 상권은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이지요. 공구마다 다른데요, 1공구는 대림, 2공구는 롯데..이런 식이지요.

- 송파구 장지동 세부계획이 확정되었나요?

김수길: 세부적인건 미확정입니다. 면적이랄지.

## 참고문헌

### [단행본·논문·보고서]

- 공금록(2003), “청계천 복원 계획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성(1994),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국가인권위원회(2002), 『국내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 6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토연구원(2001),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서울: 한울
- 김귀옥(1999), “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한울
- 김영화·공정원(2002. 12), “권리로서의 주거와 사회복지적 의의”, 『복지행정논총』, 제 12권 2호, 서울: 한국복지행정학회
- 김형국 편저(1989),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 나남
- 남상희(2001),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본 도시와 생애사 연구: 독일 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대한주택공사(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달성방안』, 서울: 대한주택공사
- 박명규(1996), “중양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위임, 『중양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재환(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박태호(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 숲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2000), 『청계천: 공간, 시간, 사람』,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2002),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영향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내부자료
- 서종균(1999), ‘강제철거의 비인간성과 그 대책’, 『도시와 빈곤』, 제 22호, 1999. 5,

19-33쪽 한국도시연구소

- 윤일성(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 호(1996), '난지도와 난지도 주민들의 주거권', 『도시와 빈곤』, 제 21호, 1996. 3,  
47-67쪽 한국도시연구소
- 이무용 외(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서울: 시각과 언어
-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이정은(1999),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1999), 『인간답게 살 권리-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서울: 사람생각
- 임현진(1998), 『지구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우용 외(2001), 『청계천 : 시간, 장소, 사람』,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조명래(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조은·조옥라(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근희(1996),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공간구조』,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최장집(1989), 『한국 현대정치와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 하성규(2003), 『한국도시 재개발의 사회경제론』, 서울: 박영사
- 하성규·김형국(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서울: 나남 출판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서울: 아카넷
- 한국도시연구소(1996), 『도시 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서울: 도서출판 발언
-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서울: 한길사
- \_\_\_\_\_ (2002),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1』, 서울: 사람생각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상진 편(1998),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 출판
- 허석렬(1982), "도시무허가정착지의 고용구조에 관한 일고찰", 서울: 서울대학교

- 사회학 연구회 엮음, 『한국사회학연구』
- 홍인옥(1999),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도시연구』, 제 5호, 한국도시연구소, 1999. 11
- Bourdieu, Pierre(1984), *Questions de sociologie*, Les Éditions de Minuit; 문경자 옮김, 『혼돈을 일으키는 과학』(1994), 서울: 솔
- Bourdieu, Pierre et al.(1993), *La Misère du Monde*, Paris: Éditions du Seuil; 김주경 옮김, 『세계의 비참 1,2,3』(2000), 서울: 동문선
- \_\_\_\_\_ (1993), *La Misère du Monde*, Paris: Éditions du Seuil; translated by Priscilla Parkhurst Ferguson et al., *The Weight of the World*(1999),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Donnelly, Jack(1997),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2nd edition;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2002), 서울: 도서출판 오름
- Giddens, Anthony(1986), *The Constitution of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print edition;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1998), 서울: 자작 아카데미
- Fassman Heinz, Fassman· Peter Meusburger(1997), *Arbeitsmarktgeographie: Erwerbstatigkeit und Arbeitslosigkeit im Raumlischen Kontext*, Borntraeger; 박영한·이정록·안영진 옮김, 『노동시장의 지리학: 공간적 맥락에서 본 취업과 실업』(2002), 서울: 한울 아카데미
- Hanson, Susan(1997), *Ten Geographic Ideas that Changed the World*, Rutgers University Press; 구자용 외 옮김, 『세상을 변화시킨 열 가지 지리학 아이디어』(2001), 서울: 한울 아카데미
- Harvey, David (1994),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Publishers; 구동희·박영민 옮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1995), 서울: 한울
- Ife, Jim(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s Rights Base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형식·여지영 옮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2001), 서울: 인간과 복지

- Karel Vasak(1983),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Greenwood Publishing Group; 박홍규 옮김, 『인권론』(1986), 서울: 실천문학사(원서에서 총론, 1부만 옮긴 것임)
- Klandermans, Bert and Suzanne Staggenborg,(Editors)(2002),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leinman, Sherryl · Martah A. Copp(1993), *Emotions and Fieldwork*, Sage Publication
- Mason, Jennifer(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김두섭 옮김, 『질적연구방법론』(1999), 서울: 나남출판
- Padgett, Deborah(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유태균 옮김,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2001), 서울: 나남
- Shute, Stephen et al.(1993), *On Human Rights*;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2000), 서울: 사람생각
- UN Commission on Economics(1991),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ral Comment No. 4 on Right to Adequate Housing*
- Werlen, Benno(2000), *Sozialgeographie*, Switzerland: Paul Haupt Berne; 안영진 옮김, 『사회공간론』(2003),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인터넷 사이트]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 [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단
- [www.sdi.re.kr](http://www.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www.council.songpa.seoul.kr](http://www.council.songpa.seoul.kr) 송파구의회
- [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
- [www.kocer.re.kr](http://www.kocer.re.kr) 한국도시연구소
- [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황학동 동사무소
- [www.un.org/rights](http://www.un.org/rights) UN Human Rights

[신문기사]

조선일보 2002년 11월 21일

문화일보 2002년 11월 28일

조선일보 2002년 12월 17일

한겨레신문 2003년 7월 2일

조선일보 2003년 7월 17일

동아일보 2003년 7월 30일

중앙일보 2003년 10월 06일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